

(表 1-3-3) 廣域自治團體의 行政區域

행정구역	시·군·구 수	읍수	면수	리수	동수	출장소수
서울특별시	25구				530	
부산광역시	15구 1군	2	3		234	
대구광역시	7구 1군	2	7		150	2
인천광역시	8구 2군	1	19		128	7
광주광역시	5구				95	7
대전광역시	5구				86	
울산광역시	4구 1군	2	10		50	
경기도	21시 10군 13구 10출장소	23	130		332	10
강원도	7시 11군	24	95		113	38
충청북도	3시 8군 2구	12 (13) ^a	91 (92) ^a	61	2	6
충청남도	6시 9군	22	147		42	7
전라북도	6시 8군 2구	14	145		133	6
전라남도	6시 18군	30	199		94	37
경상북도	10시 13군 2구	32	206		136	19
경상남도	10시 10군 2구	22	177		128	
제주도	2시 2군	7	5		196	7

주 : a 증명출장소를 포함했을 때의 읍면수

第3節 地方行政의 區域

1. 行政區域의 種類別 變遷

행정구역은 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국세청의 지방관할구역과 체신청의 지방관할구역이 서로 다르다. 또한 전매청의 관할구역과 철도청의 관할구역이 서로 같지가 않다. 그러나 전통적·보편적 의미에 있어서의 行政區域이란 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체계화된 地方行政區域을 지칭하게 된다. 이것이 곧 국가행정 내지 자치행정의 일반적인 행정단위이자 구역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구역의 구획설정에 아직 보편적인 기준과 원칙이 없듯이 그 종류에도 일반적인 이론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그것은 학문적 이론에 의한 것

이 아니라 행정구역은 그 나라의 독특한 역사적 상황하에서 변천·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나라마다 행정구역이 그 명칭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구역제도는 위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그리고 그 밑에 시·군·구, 시·군·구 밑에 읍·면·동으로 크게 3단계화되어 있고, 다시 읍·면의 말단구역으로 리·동과 반으로, 그리고 시의 동의 말단구역으로 통반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만, 역시 역사적·연혁적인 산물이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들 행정구역의 발전과정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서울特別市

新羅의 구주제하에서는 한주의 한양군이 서울지방이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양주로 개칭되고, 문종(1046-1083)대부터는 남경으로 되었다가, 충렬왕 34년(1308)에 한양부로 개칭되었다. 한양이 수도로 선정된 것은 조선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즉, 태조 3년(1394년) 10월 28일에 개경으로부터 한양으로 옮긴 것이다. 그리고 수도의 행정관인 한성부는 국초부터 외관직이 아닌 경관직이 다스린 중앙직할지로서 500년의 전통을 지녀왔으나, 1910년에 일제통치하에 들어가면서 경성부로 개칭하여 경기도의 관할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11년 5월에는 하급행정기관으로서 부면제를 채택하게 되어 경성부의 행정구역은 역내의 동·서·남·북·중의 5부와 역외의 용산, 서강, 송신, 두모, 인창, 은평, 연희, 한지의 8면으로 구획되었다. 1913년 부제가 시행됨으로써 경성부는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었는데, 1914년 3월 경기도 도령 제3호로 부읍제가 폐지되고(동년 4월 동정의 명칭과 구역개정), 9월에 경성부조례로 동부, 서부, 북부, 용산의 4개 출장소를 설치하였다가, 1년후인 1915년 6월의 조공개정으로 용산출장소만을 남기고 나머지 출장소는 폐지하였다. 그리고 1916년 9월부터 부고시로서 187동에 133구의 총대를 설치한 동정총대제도는 17년 후인 1933년 10월의 경성부정회규정에 따라 폐지되고, 그 대신 정회조직으로 개편되었다. 그리하여 경기도의 관할하에 있던 경성부는 8·15 광복후 1946년 9월 18일 미군정법령 제106호로서 서울특별자유시로 되었다가, 정부수립이후 지방자치법이 발효되면서 서울특별시로 된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1949년 8월 15일에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하여 고양군 일부를 편입시켜 성북구를 설치함으로써 9구제가 되었고, 면적은 268.35km²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1963년 1월 1일에는 인접 경기도 지역중 도시화되어가는 7면 24리를, 그리고 1973년 7월 1일에는 다시 경기도의 시흥군과 고양군 일부를 대폭 편입시켰고, 1979년 10월 1일에는 은평출장소와 천호출장소를 각각 은평구와 강동구로 승격시켰으며, 또한 1980년 4월 1일에는 구로구와 동작구를 신설하고, 1988년 1월 1일에는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를 분구하고, 1995년 3월 1일에는 광진구, 강북구, 금천구를 분구하여 오늘날의 25구에 인구 10,326천명에 이르는 대서울로 발전하게 되었다.

나. 廣域市

우리나라에서 直轄市制度가 시작된 것은 원래 경상남도관할하의 일반시였던 부산시의 인구가 점차 늘어나서 136만에 이르게 되자 도의 관할하에 두어서는 늘어나는 각종 도시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3호 「부산시 정부직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의 직할하에 들으로써 비롯되었다. 그후 인구의 증가 및 대도시 집중에 따라 1981년 7월 1일에는 법률 제3,424호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구시와 인천시가 각각 경상북도와 경기도로부터 독립하여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1986년 11월 1일에는 법률 제3808호 「광주 직할시 및 송정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주시가 전라남도로부터 독립하여 직할시로 승격되었고, 1989년 1월 1일에는 법률제4049호 「대전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충청남도로부터 독립하여 직할시로 승격되고, 1995년 1월 1일에는 지방자치법(법률제4789호)를 개정하여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사용하게 되었으며, 1997년 7월 15일 법률제 5243호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경상남도로부터 독립하여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시는 모두 6개에 이르게 되었다.

다. 道

현재의 도에 해당하는 地方行政區域이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757년)에 당제를 모방한 구주제의 채택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 성종 14년(995년)에 주제를 폐지하고 10도제를 채택하니 도의 칭호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고려 제34대 공민왕대(1389-1392)에는 종래의 도를 양분하여 좌·우도제로, 조선 태종 13년(1413년) 10월에는 8도제로, 동 제26대 고종 32년(1895년)에는 23부제로, 그 이듬해에는 다시 13도제로 되는 등 많은 변천을 거치게 되었다. 이것이 일제시대를 거쳐 1945년 광복시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국토가 양분됨으로써 남한의 도수는 8도에 한하게 되었으며, 1946년 8월 1일 군정법령 제94호로 제주군이 전라남도로부터 분리·독립되어 도로 승격하게 됨에 따라 9도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라. 郡(市)

군은 도보다 더 오랜 연혁을 지닌 地方行政區域이다. 고구려시대의 홀·과·의·내소·세홀·홀차·군·현, 고려시대의 목·군·현, 조선시대의 목·부·군·현 등이 모두 군의 전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명칭을 지녔던 지방적 구역이 군으로 통일된 것은 고종 32년(1895년)의 을미개혁시 23부제를 채택하면서 그 관할구역으로 336군제를 채택한 데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듬해인 1896년의 병신개혁으로 23부 336군제가 혁파되고, 13도·1목·7부 341군의 제도가 채택됨으로써 오늘날 시의 전신인 부가 현대사에 등장하게 되었고, 이것이 1913년의 부제로 확고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광복당시에는 21부, 218군이었는데,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부를 시로 개편하여 시·군으로 되었으며, 지난 50년동안 적지 아니한 구역조정을 거쳐 1997년 12월 1일 현재로는 71시·94군·90구(자치구 69, 행정구 21)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마. 邑·面

면이 법률상의 행정구역으로 된 것은 1909년 법률 제20호 「지방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건」에서 비롯된다. 이로써 종래 사·방·군·면 등 잡다하게 불리어 왔던 면이 법률상의 행정구역으로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면은 한일합병 당시 부군관할 구역내에 4,322개소였으나, 1914년부터 실시된 부제로 인하여 부구역내의 면이 전 폐되고, 군내의 면도 폐합되었다. 그뒤 1817년에 면제, 1920년의 개정, 1930년의 읍면제등을 거쳐 제도의 확립을 보게 되었으며, 지난 50년간 적지 않은 개편과 조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193읍, 1,234면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읍은 1920년의 면제개정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지정면제도가 그 전신으로 이것이 1930년 읍면제의 채택에 의하여 읍이란 명칭으로 된 것이다.

2. 行政區域의 時代別 變遷

가. 政府樹立以後 1950年代까지

세계 제2차대전의 종료와 동시에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들자는 카이로 선언은 포츠담선언에서도 그 이행이 확인되었지만, 이 때의 복잡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이를 허용해주지 아니하였다. 1945년 12월에는 소위 모스크바결정이라는 4대국 신탁통치안이 새로이 대두되었고, 다음해 5월에는 이 결정에 따른 남북한 점령지역 조정안을 타협하기 위하여 미소양군공동회의가 열리더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같은 해 3월에는 다시 한국 임시정부수립과 임시정부 참여하의 4대국 신탁통치협약 작성을 위하여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이 미소공동위원회 역시 아무런 결론도 얻지를 못하였다. 특히, 당초부터 속셈을 달리해 온 소련은 1947년 5월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앞서 그해 2월 벌써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켜 독자적인 공산정권의 수립을 서둘러왔다. 그리하여 민족지도자들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적화야욕의 벽에 부딪혀 통일정부 수립의 염원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하에서 남한만의 單獨政府 수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총선거를 거쳐 그해 8월 15일에 大韓民國政府의 수립을 보게 되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새로이 출발하게 된 우리 정부는 그해 8월 16일부터 남조선과도정부로부터 사무인수작업에 착수하였고, 8월 24일에는 주한미군과 잠

정적인 군사행정협정을 체결하고 행정이양회의를 열어 9월 13일까지 통위부, 경찰부 등 모든 행정권의 인수를 끝마치게 되었다. 이때의 남조선과도정부란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로 통일임시정부의 수립이 힘들게 되자 남한만이라도 군정하의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하는 단계적인 조치를 위하여 마련한 문자 그대로의 과도정부였다.

이러한 행정권의 인수작업과 함께 필요한 입법조치가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1948년 11월 17일에 공포되기에 이르렀고, 동법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제43호의 공포를 통하여 시·도·부·군·도의 관할구역을 1948년 8월 15일 현재에 의하도록 규정하게 됨으로써 당시의 우리나라 地方行政區域은 앞에서 밝힌 1시, 9도, 14부, 133군, 1도, 7읍, 1,456면의 체계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였고, 이북에 대하여는 우리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함으로 인하여 행정구역 또한 군정하의 그것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1948년 11월 17일에 공포된 이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하나의 잠정법으로서 다음해에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실효가 되었지만, 9개월여동안 이 법의 시행하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행정구역 조정이 추진되었다. 즉 1949년 5월과 8월 사이에 경기도 고양군의 송인면, 蘘島面, 은평면의 서울시 편입을 비롯하여 수원·여수·순천·포항·김천 등 5개읍이 부로 승격되었고, 안강·옥천·중평·왜관·청도·안양·광양 등 7개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이 때의 시도간의 경계조정과 시 및 읍의 승격은 모두 대통령령 규정사항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表 1-3-4) 政府成立以後 1950年代의 地方行政區域 調整內역

연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1949. 5. 20	대통령령 제 99호	안강읍 설치	•경주군 감서면을 안강읍으로 승격
1949. 8. 13	대통령령 제156호	옥천읍 설치	•옥천군 옥천면을 읍으로 승격
"	대통령령 제156호	증평읍 설치	•괴산군 증평면을 읍으로 승격
"	대통령령 제156호	왜관읍 설치	•漆谷郡 왜관면을 읍으로 승격
"	대통령령 제156호	청도읍 설치	•청도군 청도면을 읍으로 승격
"	대통령령 제159호	성북구 설치	•동대문구 돈암동·안암동 1,2,3,4,5가, 종암동·성북동과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을 합하여 성북구를 설치
"	대통령령 제160호	서대문구관할확장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을 서대문구에 편입
"	대통령령 제160호	성동구관할확장	•경기도 고양군 독도면을 성동구에 편입
"	대통령령 제160호	영등포구관할 구역확장	•경기도 시흥군 동면 구로리·도림리·대방리를 영등포구에 편입
1949. 8. 14	대통령령 제161호	수원부 설치	•수원군 수원읍을 부로 승격하고 수원군의 명칭을 화성군으로 변경
"	대통령령 제161호	여수부 설치	•여수군 여수읍을 부로 승격하고 여수군을 여천군으로 명칭 변경
"	대통령령 제161호	순천부 설치	•순천군 순천읍과 同郡 사도면 및 해룡면 왕문리, 조례리, 연향리를 분할하여 부로 승격하고 순천군을 승주군으로 명칭 변경
"	대통령령 제161호	포항부 설치	•영일군 포항읍을 부로 승격하고
"	대통령령 제161호	김천부 설치	•김천군 김천읍을 부로 승격하고 김천군을 금릉군으로 명칭 변경
"	대통령령 제162호	안양읍 설치	•시흥군 안양면을 읍으로 승격
"	대통령령 제162호	광양읍 설치	•광양군 광양면을 읍으로 승격

연 월 일	법령 번호	변경 요지	변경 내역
1950. 1. 1	법률 제271호	거제군 설치	• 통영군 장승포읍, 장수면, 둔덕면, 거제면, 사등면, 일운면, 동부면, 하청면, 연초면을 합하여 거제군 설치
1955. 7. 1	법률 제359호	고상읍 설치	• 고상군 고상면을 읍으로 승격
"	법률 제359호	영광읍 설치	• 영광군 영광면을 읍으로 승격
"	법률 제359호	해남읍 설치	• 해남군 해남면을 읍으로 승격
"	법률 제361호	광주시구역확장	• 광산군 서방면, 극락면과 석곡면 화암리, 창풍리, 망월리, 운정리 및 효지면을 광주시에 편입
"	법률 제360호	창녕군 창녕면 구역확장	• 창녕군 창락면을 창녕면에 편입
"	법률 제360호	통영군 원량면을 분할	• 통영군 원량면을 옥지면과 사랑면으로 분할
1955. 9. 1	법률 제368호	제주시 설치	• 북제주군 제주읍을 시로 승격
"	법률 제369호	원주시 설치	• 원주군 원주읍과 동군 판부면 주구리, 점구리 및 호계면 우산리를 합하여 원주시로 승격하고 원주읍을 원성군으로 명칭 변경
1955. 9. 1	법률 제370호	경주시 설치	• 경주군 경주읍과 내동면, 천북면 황성리·동천리·용강리 및 내남면 탑리를 합하여 경주시로 승격하고 경주군을 월성군으로 명칭 변경
"	법률 제371호	충무시 설치	• 통영군 통영읍을 시로 승격
"	법률 제372호	강릉시 설치	• 강릉군 강릉읍과 성덕면 및 경포면을 합하여 강릉시로 승격하고 강릉군을 명주군으로 명칭 변경
"	법률 제373호	진해시 설치	• 창원군 진해읍을 시로 승격
1956. 7. 8	법률 제389호	충주시 설치	• 충주군 충주읍을 시로 승격하고 충주군을 중원군으로 명칭 변경
"	법률 제390호	삼천포시 설치	• 사천군 삼천포읍과 남양면을 합하여 삼천포시로 승격
"	법률 제391호	서귀읍 설치	• 남제주군 서귀면을 읍으로 승격
"	법률 제392호	남원읍 구역확장	• 남원군 남원읍에 동군 王岫面을 편입
"	법률 제393호	사천읍 설치	• 사천군 사천면을 읍으로 승격
"	법률 제393호	경산읍 설치	• 경산군 경산면을 읍으로 승격
1956. 7. 8	법률 제393호	점촌읍 설치	• 문경군 호서남면을 점촌읍으로 승격
"	법률 제339호	음성읍 설치	• 음성군 음성면을 읍으로 승격
"	법률 제393호	대정읍 설치	• 남제주군 대정면을 읍으로 승격
"	법률 제393호	한림읍 설치	• 북제주군 한림면을 분할하여 한림읍과 한경면을 설치
"	법률 제394호	의창면 설치	• 영일군 흥해면과 곡강면을 합하여 의창면 설치
"	법률 제393호	봉화군 봉화면 명칭변경	• 봉화군 내성면을 봉화면으로 명칭 변경
"	법률 제395호	삼례읍 설치	• 원주군 삼례면을 읍으로 승격
1949. 8. 14	법률 제407호	부산시·구 설치	• 부산시에 중구·서구·영도구·동구·부산진구·동래구 설치
"	법률 제450호	함양읍 설치	• 함양군 함양면과 석하면을 합하여 함양읍 설치
"	법률 제451호	거창읍 구역확장	• 거창군 거창읍에 동군 월천면을 편입
"	법률 제451호	영일군달전면폐지	• 영일군 달전면을 폐지하고 관할구역 10개동중 5개동(초곡동, 학천동, 성곡동, 흑인동, 대련동)을 동군 의창면에, 5개동(학전동, 달전동, 명류동, 자명동, 유강동)을 동군 연일면에 각각 편입
"	법률 제452호	대구시 구역확장	• 달성군의 5개면(동촌면, 월배면, 성서면, 가창면, 공산면)을 대구시에 편입

연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	법률 제453호	전주시 구역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군 초포면의 우방리, 신성리, 조암리, 송전리, 전당리, 미산리, 동군 용진면의 아중리, 산정리 중 석소부락, 동군 상관면의 대성리중 산성부락, 동군 우전면의 태평리, 송정리, 석불리, 장천리, 문정리, 계율리, 효자리, 홍산리, 안산리, 동군 조촌면의 오송리, 시천리, 동곡리, 동산리중 신북부락, 구주부락, 감천부락, 유제부락을 각각 전주시에 편입 ※동법률에 의하여 완주군 초포면을 동군 삼례읍 관할구역에 가하고 완주군 초포면 상운리는 동군 용진면에 가하고 완주군 우전면 4개리(석구리, 중인리, 용복리, 원당리)를 동군 구이면 관할 구역에 가함)
1919. 4. 14	법률 제454호	광주시 구역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군 대촌면, 지산면, 서창면(송대리 제외) 과 담양군 남면 덕이리, 충효리, 금곡리를 각각 광주시에 편입 ※동법률에 의하여 광산군 서창면 송대리는 동군 동곡면 관할구역에 편입하였음.
"	법률 제455호	무안군 무안면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안군 금성면의 명칭을 무안면으로 변경
"	법률 제456호	당진군 구역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군 대호지면과 정미면을 당진군에 편입

나. 1960年代

정치적·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함으로써 단 1건의 행정구역조정작업도 추진되지 못하였다.

1960년대의 행정구역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表 1-3-5〉 1960年代의 地方行政區域 調整內容

연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1961. 1. 1	법률 제537호	부여읍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군 부여면을 읍으로 승격
"	법률 제538호	창녕읍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녕군 창녕면을 읍으로 승격
"	법률 제539호	영월읍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월군 영월면에 동군 상동면 연하리를 편입하여 읍으로 승격
"	"	장성읍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군 상장면의 명칭을 변경하여 장성읍으로 승격
"	"	오산읍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군 오산면을 읍으로 승격
1962. 6. 1	법률 제1068호	울산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군 울산을 방어진읍, 동군 대현면 하상면과 청량면 범서면 농소면 일부를 폐합하여 울산시로 승격
1963. 1. 1	법률 제1172호	동대문구구역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양천군 구리면 상봉리, 중하리, 목동리, 신내리 및 망우리를 편입
"	"	同市 성동구 구역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광천군 구천면, 언천면, 중대면과 대왕면 일원리, 수서리, 자곡리, 율현리 및 세곡리를 편입
"	"	同市 성북구 구역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을 편입
"	"	同市 영등포구 구역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 양서면, 부천군 오정면, 오곡리 및 五銚面, 소사읍 향리, 온수리, 부리, 천왕리, 오류리, 개봉리 및 고척리, 시흥군 신동면, 동면 시흥리, 독산리, 가리봉리, 신림리 및 봉천리 등을 편입

년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	"	도 구역조정	• 충청남도의 관할구역에 전라북도 금산군을 편입
"	"	도 구역조정	• 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강원도 울진군을 편입
"	"	영양군 수북면 구역확장	• 울진군 온정면 본신리를 수북면에 편입
"	"	괴산군 청천면 구역확장	• 문경군 농암면 삼송리를 청천면에 편입
"	"	영월군 상동면 구역확장	• 봉화군 춘양면 천평리, 덕구리를 상동면에 편입
"	법률 제1173호	위도면 소속 변경	• 전라남도 영광군 위도면을 전라북도에 편입
"	법률 제1174호	부산시의 정부 직할시 승격	• 경상남도 부산시와 동래군의 구포읍 사상면, 북면 및 기장면 송정리를 합하여 직할시로 승격
"	법률 제1175호	대구시 구 설치	• 중구, 동구, 남구, 서구, 북구 설치
"	"	양주군 수동면 설치	• 양주군 화도면 지둔리·윤수리 및 송천리, 진접면 수산리와 가평군 외면면 입석리, 외방리 및 내방리를 그 관할구역으로 양주군 수동면 설치
"	"	시흥군 의왕면 설치	• 화성군 일왕면 이리·삼리·고천리·왕곡리·오전리·학익리·내소리·청계리 및 포일리를 그 관할구역으로 시흥군 의왕면 설치
"	"	화성군 태안면 설치	• 초성군 합장면 영통리·화리·강을리·반월리·능리·기산리·병점리 및 진언리와 안용면 기안리·배양리·황계리·반정리·송산리 및 안녕리를 그 관할구역으로 화성군 태안면을 설치하고 합장면과 안용면은 폐지
"	"	광산군 서창면 설치	• 광주시 서호동·방하동 및 신흥동을 그 관할구역으로 광산군 서창면 설치
"	"	광산군 대촌면 설치	• 광주시 송석동·등용동 및 학송동을 그 관할구역으로 광산군 대촌면 설치
"	"	달성군 공산면 설치	• 대구시 지요동·덕곡동·송정동·중대동·신용동·내동·미대동·신무동·백안동·용수동·미곡동·진인동·도학동·능성동 및 연경동을 그 관할구역으로 달성군 공산면 설치
"	"	달성군 가창면 설치	• 대구시 용계동·오동·정대동·행정동·상원동·주산동·대일동·냉천동·우록동·삼산동·옥분동 및 주동을 그 관할구역으로 달성군 가창면 설치
"	"	달성군 성서면 설치	• 대구시 갈산동·파산동·파호동·호림동·신당동·이곡동·장동·장기동·용산동·죽전동·본리동 및 감천동을 그 관할구역으로 달성군 성서면 설치
"	"	달성군 월배면 설치	• 대구시 진천동·유천동·대천동·월성동·상인동·도원동·월암동 및 송현동을 그 관할구역으로 달성군 월배면 설치
"	"	거제군 신현면 설치	• 거제군 장승포읍 수월리 및 양정리와 일운리·삼거리·문동리·삼동리·고현리 및 장평리를 그 관할구역으로 거제군 신현면 설치
"	"	인천시 민석동 구역확장	• 부천군 영종면 운남리 중조약도를 편입
"	"	수원시 구역 확장	• 화성군 안용면 곡반정리·대황교리·장지리·고색리·평리 및 오목천리, 태장면 원천리·매탄리 및 권선리와 일왕면 상광교리·하광교리·橐園里·송죽리·색장리·정자리·이목리·울전리·泉川里·탑리 및 구운리를 편입
"	"	시흥군 안양면 구역확장	• 시흥군 동면 안양리, 서면 박달리를 편입
"	"	양평군 구역확장	• 여주군 개군면을 양평군에 편입

년 월 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	"	안성군 구역확장	• 용인군 고삼면을 안성군에 편입
"	"	청주시 구역확장	• 청원군 사주면을 청주시에 편입
"	"	중원군 구역확장	• 괴산군 상모면을 중원군에 편입
"	"	대전시 구역확장	• 대덕군 유천면과 회덕면 대화리·오정리·용전리와 산내면 옥계리·가평리·삼정리·호동리를 편입
"	"	무안군 삼향면 구역확장	• 무안군 이로리·대양리·석현리·옥암리를 편입
"	"	고흥군 풍양면 구역확장	• 고흥군 봉래면 시산리를 편입
"	"	고흥군 도산면 구역확장	• 고흥군 봉래면 지죽리를 편입
"	"	고흥군 포두면 구역확장	• 고흥군 봉래면 오취리를 편입
"	"	고흥군 도양면 구역확장	• 고흥군 금산면 오마리 및 소록리를 편입
"	"	무안군 초도면 구역확장	• 무안군 흑산면 위도리를 편입
"	"	무안군 장산면 구역확장	• 진도군 오산면 마진도리를 편입
1963. 1. 1	"	동래군 구역확장	• 울주군 서생면을 편입
"	"	황성군 안흥면 구역확장	• 영월군 수주면 강림리·부곡리 및 월현리를 편입
"	"	논산군 가야곡면 구역확장	• 논산군 구자곡면 삼전리·왕암리 및 아촌리를 편입
"	"	논산군 은진면 구역확장	• 논산군 구자곡면 시묘리를 편입
"	"	목포시 구역확장	• 무안군 이로면 산정리·상리·용당리·달리 및 내도리를 편입
"	법률 제1176호	의정부시 설치	• 양주군 의정부읍을 시로 승격
"	"	천안시 설치	• 천안군 천안읍과 동군 환성면을 그 관할구역으로 하고, 천안군을 천원군으로 명칭 변경
"	"	안동시 설치	• 안동군 안동읍을 시로 승격
"	"	속초시 설치	• 양양군 속초읍을 시로 승격
"	법률 제1177호	연무읍 설치	• 논산군 구자곡면중 마산리·죽평리·금곡리·동산리·죽본리·소용리 및 양지리와 전라북도 익산군 황화면 일원을 그 관할구역으로 읍 설치
"	"	동두천읍 설치	• 양주군 이염면을 읍으로 승격, 명칭변경
"	"	송탄읍 설치	• 평택군 송탄면을 읍으로 승격
"	"	대천읍 설치	• 보령군 대천면을 읍으로 승격
"	"	당진읍 설치	• 당진군 당진면을 읍으로 승격
"	"	구례읍 설치	• 구례군 구례면을 읍으로 승격
"	"	함평읍 설치	• 함평군 함평면을 읍으로 승격
"	"	구미읍 설치	• 선산군 구미면을 읍으로 승격
"	"	남지읍 설치	• 창녕군 남지면을 읍으로 승격
"	"	화순읍 설치	• 화순군 화순면을 읍으로 승격
"	"	삼량진읍 설치	• 밀양군 삼량진면을 읍으로 승격
"	"	도계읍 설치	• 삼척군 소달면을 읍으로 승격
"	"	홍천읍 설치	• 홍천군 홍천면 일원과 남면 삼마치리를 그 관할구역으로 함.
"	"	수복지구구역조정	• 금화군을 칠원군에 폐합, 칠원군 신서면을 경기도 연천군에 편입
"	"	수복지구구역조정	• 인제군 해안면을 동군 서화면에 폐합
"	"	수복지구구역조정	• 양구군 북면을 양구면에 폐합

년 월 일	법령 번호	변경 요지	변경 내역
"	법률 제1640호	서울시의 구의 관할구역 변경	장서군 장남면과 장도면을 연천군 백학면에 폐합 장서군 군내면을 파주군 임진면에 편입
"	"	서울시의 구의 관할구역 변경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구역에 동시 마포구 아현동과 창천동간의 도로 이북의 지역을 편입 • 동시 마포구 관할구역에 서대문구 북아현동·대현동·노고산동과 창천동중 아현동과 창천동간의 도로 이남의 지역을 편입
"	법률 제1641호	대구시의 구의 관할구역 변경	• 대구시 중구의 관할구역에 북구 태평로 3가를 편입
1967. 6. 23	법률 제1738호 대통령령 제5082호	경기도청 위치변경	• 경기도청 위치를 경기도 수원시로 변경
1968. 1. 1	법률 제1919호	인천시 구 설치	• 중구, 동구, 남구, 북구
1969. 1. 1	법률 제2059호	신안군 설치	• 무안군 지도면·임자면·자은면·비금면·향토면·흑산면·하의면·장산면·안좌면·암태면·압해면을 관할구역으로 군 설치

다. 1970年代

지난 1962년부터 비롯된 경제개발계획은 1971년도에 제2차계획이 성공리에 완료되었고, 1972년부터 시작된 제3차계획도 기대 이상의 결실을 거두었다. 經濟開發計劃이 시작되기 이전 5년동안 우리나라의 經濟成長率은 연평균 5%로서 이 기간의 세계경제성장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1차계획기간(1962-1971)에 수출의 증대와 공업화의 촉진으로 성장률이 10.5%로 가속화되었으며, 3차계획기간(1972-1976)에는 국제통화체제의 동요, 자원파동 및 계속된 세계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자율의 지속과 수출의 증대로 연평균 11%의 경이적인 성장을 지속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國民總生産은 불변시장가격으로 1961년 54억달러에서 1975년에는 188억달러로 연평균 9.3%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동안 人口는 연평균 2.3%로 증가하여 1975년에 3천5백만명에 달하였고, 1인당 실질국민총생산은 연평균 7%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경상가격으로 표시한 1인당 국민총생산은 1961년에 83달러에서 1975년에는 532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개발의 중점을 工業化에 두었기 때문에 공장의 위치가 그 선결과제였다. 또한 이에 따른 에너지원의 개발과 도로교통 등 社會間接資本의 확충사업이 강력히 추구되어 왔고, 그리하여 많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高速道路가 설치되었으며, 다목적 수자원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대단위 사업의 추진으로 국토의 기능이 변모되고, 주민들의 생활권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댐의 건설과 고속도로의 새로운 개통은 기존의 行政區域體系 일부에 개편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또한 공업화의 성공적인 추진에 따라 都市化의 경향이 가속화됨으로써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이 점차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더욱 현저하여 여기에도 행정구역의 재조정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 이루어진 우리

나라 地方行政區域의 變遷內容을 주요한 것만 간추려 그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1-3-6〉 1970年代의 地方行政區域 變遷狀況

연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1972.12.28	법률 제2395호	수복지구 구역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원군 철원면에 종전 북면·내문면을 편입 •철원군 갈말면에 종전 평령군 남면을 편입
"	"	수복지구 구역조정	
1973. 7. 1	법률 제2596호	서울시와 경기도 관할구역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주군의 관할구역에 종전에 장단군 장단면 군내면·진동면·진 서면을 편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봉동 일부를 경기도 시흥군 광명리에 편입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일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봉동에 편입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구파발리·진관내리·진관외리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편입
"	"	서울시와 경기도 관할구역 조정	
"	법률 제2597호	안양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흥군 안양읍을 시로 승격 •광주군 대왕면·낙생면·돌마면과 중부면중 주대리·상대원리·탄리·수진리·북정리·창곡리를 합하여 성남시로 승격 •부천군 소사읍을 시로 승격
"	"	성남시 설치	
"	"	부천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천군을 폐지하고 소래면을 경기도 시흥군에 편입 •영종면·북도면·용유면·덕적면·영흥면·대부면을 경기도 용진군에 편입
"	"	부천시 폐지	
"	"	동래군 폐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래군을 경신남도 양산군에 편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반포동·잠원동·서초동·양재동·우면동·원지동을 성동구에 편입 •동시 서대문구 성산동 일부를 마포구 망원동에 편입 •동시 마포구 동교동 일부와 서교동 일부를 서대문구 연희동에 편입 •동시 서대문구 연희동 일부를 마포구 동교동에 편입 •동시 성동구 중곡동 일부를 동대문구 면목동에 편입 •동시 동대문구 면목동 일부를 성동구 중곡동에 편입
"	법률 제6548호	서울특별시의 구 관할구역 조정	
"	"	도봉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반동·수유동·우이동·창동·월계동·쌍문동·상계동·중계동·도봉동·방학동·공덕동·하계동을 분할하여 도봉구 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량진동·상도동·상도1동·봉천동·분동·흑석동·동작동·사당동·대방동·신대방동·방배동·신림동을 분할하여 관악구 설치
"	"	관악구 설치	
"	대통령령 제6544호	광주시 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구·서구 •양주군 구리면을 읍으로 승격 •파주군 아동면을 금촌읍으로 승격 •파주군 임진면과 월총면의 내포리를 합하여 문산읍으로 승격 •가평군 가평면을 읍으로 승격 •강화군 강화면을 읍으로 승격 •고양군 신도면을 읍으로 승격 •영월군 상동면과 정선군 신동면 천포리 일부를 합하여 상동읍으로 승격
"	"	구리읍 설치	
"	대통령령 제6543호	금촌읍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주군 임진면과 월총면의 내포리를 합하여 문산읍으로 승격 •가평군 가평면을 읍으로 승격 •강화군 강화면을 읍으로 승격 •고양군 신도면을 읍으로 승격 •영월군 상동면과 정선군 신동면 천포리 일부를 합하여 상동읍으로 승격
"	"	문산읍 설치	
"	"	가평읍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평군 가평면을 읍으로 승격 •강화군 강화면을 읍으로 승격 •고양군 신도면을 읍으로 승격 •영월군 상동면과 정선군 신동면 천포리 일부를 합하여 상동읍으로 승격
"	"	강화읍 설치	
"	"	신도읍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평군 가평면을 읍으로 승격 •강화군 강화면을 읍으로 승격 •고양군 신도면을 읍으로 승격 •영월군 상동면과 정선군 신동면 천포리 일부를 합하여 상동읍으로 승격
"	"	상동읍 설치	

년 월 일	법령 번호	변경 요지	변경 내역
"	"	정선읍 설치	• 정선군 정선면을 읍으로 승격
"	"	사북읍 설치	• 정선군 동면중 사북리·고간리·직전리를 합하여 사북읍으로 승격
"	"	거진읍 설치	• 고성군 거진면을 읍으로 승격
"	"	황지읍 설치	• 삼척군 장성읍중 황지리·적각리·창죽리·화전리·소도리·혈리·통리를 분할하여 황지읍으로 승격
"	"	보은읍 설치	• 보은군 보은면을 읍으로 승격
"	"	진천읍 설치	• 진천군 진천면을 읍으로 승격
"	"	금왕읍 설치	• 음성군 금왕면을 읍으로 승격
"	"	신탄진읍 설치	• 대덕군 북면을 신탄진읍으로 승격
"	"	유성읍 설치	• 대덕군 유성면을 읍으로 승격
"	"	삽교읍 설치	• 예산군 삽교면을 읍으로 승격
"	"	합덕읍 설치	• 당진군 합덕면을 읍으로 승격
"	"	태안읍 설치	• 서산군 태안면을 읍으로 승격
"	"	성환읍 설치	• 천원군 성환면을 읍으로 승격
"	"	봉동읍 설치	• 완주군 봉동면을 읍으로 승격
"	"	도양읍 설치	• 고흥군 도양면을 읍으로 승격
"	"	의창읍 설치	• 영일군 의창면을 읍으로 승격
"	대통령령 제6543호	건천읍 설치	• 월성군 서면중 건천리·천포리·송선리·신평리·용명리·대곡리·화천리·모량리·방내리·역리·조전리를 분할하여 건천읍으로 승격
"	"	안심읍 설치	• 경산군 안심면을 읍으로 승격
"	"	하양읍 설치	• 경산군 하양면을 읍으로 승격
"	"	문경읍 설치	• 문경군 문경면을 읍으로 승격
"	"	가은읍 설치	• 문경군 가은면과 상주군 이안면 저음리를 합하여 가은읍으로 승격
"	"	풍기읍 설치	• 영천군 풍기면을 읍으로 승격
"	"	풍산읍 설치	• 안동군 풍산면을 읍으로 승격
"	"	금호읍 설치	• 영천군 금호면을 읍으로 승격
"	"	하남읍 설치	• 밀양군 하남면을 읍으로 승격
"	대통령령 제6242호	대저읍 설치	• 김해군 대저면을 읍으로 승격
"	"	읍·면간 경계 조정	• 포천군 포천면 탑동리를 양주군 동두천읍으로 편입 • 양평군 서종면 삼회리를 가평군 외서면으로 편입 •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일부를 가평군 운악면으로 편입 • 인천시 동구 만석동 월미도를 인천시 중구로 편입 • 파주군 적성면 장파리를 파주군 파주면으로 편입 • 광주군 퇴촌면 금사리·이석리·삼성리를 남경면으로 편입 • 광주군 도척면 삼리 및 초월면 신대리를 실촌면으로 편입 • 광주군 오포면 목리를 광주면으로 편입 • 광주군 초월면 상번천리 및 하번천리를 중부면으로 편입 • 용인군 구성면 죽전리를 수지면으로 편입 • 용인군 원삼면 가좌리를 외서면으로 편입 • 춘성군 신동면 칠전리·송암리·삼천리와 신북면 신통리 및 서면 현암리 금산리 일부를 춘천시에 편입 • 원성군 호저면 가현리와 흥업면 무실리 및 판부면 관설리 반곡리를 원주시에 편입 •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정천리를 속초시에 편입

년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1973.7.1	대통령령 제6242호	시·군간 읍·면간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성군 동산면 북방리를 흥천군 북방면으로 편입 • 춘성군 동산면 풍천리를 흥천군 화천면으로 편입 • 양양군 서면 명개리를 흥천군 내면으로 편입 • 흥천군 남면 상창봉리를 횡성군 공근면으로 편입 • 영주군 왕산면 남곡리·구절리를 정선군 북면으로 편입 • 삼척군 하장면 도전리·가목리를 정선군 임계면으로 편입 • 인제군 서화면 현리·오류리·만대리·후리·월산리·니현리를 양구군 동면으로 편입 • 인제군 남면 두무리를 양구군 남면으로 편입 • 양구군 남면 상수내리·하수내리 및 춘성군 북산면 수산리를 인제군 남면으로 편입 • 흥천군 내면 미산리를 인제군 인제면으로 편입 • 흥천군 북방면 노일리 일부를 흥천군 남면으로 편입 • 횡성군 우천면 조곡리·생운리·남산리 및 공근면 학곡리 일부를 횡성군 횡성면으로 편입 • 횡성군 안흥면 하궁동·정금리·산전리·용둔리·하대리·상대리·상가기를 횡성군 우천면으로 편입 • 횡성군 둔내면 영랑리 일부를 횡성군 안흥면으로 편입 • 횡성군 청일면 울동리·삼거리·전촌리·추동리·대관대리·병지방리를 갑천면으로 편입 • 회성군 갑천면 유평리·갑천리·고시리·신대리 일부를 청일면으로 편입 • 춘성군 안흥면 궁종리·갑천리·신대리 일부를 둔내면으로 편입 • 원성군 지정면 무장리를 호저면으로 편입 • 영월군 하동면 정양리 및 남면 팔괴리·흥월리를 영월읍으로 편입 • 영월군 서면 북쌍리를 남면으로 편입 • 영창군 도암면 봉산리·호명리 일부를 진부면으로 편입 • 영창군 진부면 장평리를 봉평면으로 편입 • 철원군 서면 청양리·도창리를 김화읍으로 편입 • 양양군 양양면 상왕도리 일부를 양양면으로 편입 • 삼척군 노곡면 금학리를 근덕면으로 편입 • 청원군 북이면 초중리를 괴산군 증평읍으로 편입 • 증원군 이류면 하문리를 괴산군 佛頂面으로 편입 • 증원군 신이면 황월리 일부를 음성군 벽이면으로 편입 • 청원군 남이면 불이라·산수리를 부용면으로 편입 • 청원군 남이면 석곡리를 강서면으로 편입 • 옥천군 이원면 우산리를 동이면으로 편입 • 옥천군 군북면 정계리, 안남면 오덕리·인포리를 안내면으로 편입 • 옥천군 안내면 옹호리, 막대리를 군북면으로 편입 • 영동군 영동면 고자리와 매곡면 둔대리를 상촌면으로 편입 • 괴산군 감물면 검승리를 괴산면으로 편입 • 음성군 생곡면 도신리 일부를 금양면으로 편입 • 제천군 덕산면 수곡리를 수산면으로 편입 • 공주군 장기면 나성리·송원리를 연기군 남면으로 편입

년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1973. 7. 1	대통령령 제6542호	시·군·구 읍·면간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군 반포면 도암리·성덕리·영곡리를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 • 금산군 복수면 용지리를 추부면으로 편입 • 공주군 사곡면 연종리·세동리·구계리와 신평면 백교리·노동리를 유구면으로 편입 • 논산군 가지곡면 석서리를 양촌면으로 편입 • 부여군 장암면 사산리를 세도면으로 편입 • 부여군 석성면 현북리를 부여읍으로 편입 • 사천군 마서면 남산리를 사천면으로 편입 • 사천군 화양면 구동리를 한산면으로 편입 • 사천군 기산면 이사리를 마산면으로 편입 • 사천군 한산면 송림리와 종천면 홍림리를 판교면으로 편입 • 청양군 비봉면 청수리와 학당리를 청양면으로 편입 • 서산군 인지면 갈산리·음암리·수석리를 서산읍으로 편입 • 서산군 이북면 마산리와 청산리를원화면에 편입 • 서산군 인면면 차월도리를 부석면으로 편입 • 아산군 탕정면 모종리와 권곡리를 온양읍으로 편입 • 천원군 수신면 복다회리, 동면 옹두리를 병천면으로 편입 • 당진군 정미면 어미리를 운산면으로 편입 • 완주군 용진면 산정리 일부를 전주시에 편입 • 익산군 왕궁면 온수리 일부를 전주군 삼례읍으로 편입 • 익산군 오산면 목천리 일부를 김제군 백구면으로 편입 • 익산군 오산면 남일리 일부와 신지리 일부를 김제군 공덕면으로 편입 • 김제군 백구면 반월리 일부, 강흥리 일부를 익산군 춘포면으로 편입 • 진안군 부귀면 정곡리를 진안면으로 편입 • 진안군 상전면 월평리를 정천면으로 편입 • 정읍군 청우면 오금리를 이평면으로 편입 • 정읍군 산내면 종산리·목옥리를 산외면으로 편입 • 고부군 신림면 제하리를 홍덕면으로 편입 • 옥구군 옥산면 지곡리·사정리, 미면 신평리, 미룡리·모율리·경장리, 성산면 내흥리, 개정면 개정리를 군산시에 편입 • 김제군 백구면 이정리 일부를 이리시에 편입 • 옥구군 서수면 신기리를 익산군 황등면으로 편입 • 광양군 골약면 송경리를 여천군 울촌면으로 편입 • 곡성군 오곡면 묘천리를 곡성면으로 편입 • 승주군 쌍암면 석흥리를 낙안면으로 편입 •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를 남양면으로 편입 •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 일부를 도화면으로 편입 • 보성군 문덕면 동교리를 북내면으로 편입 • 화순군 동면 수만리를 화순읍으로 편입 • 장흥군 장동면 광평리를 장평면으로 편입 • 강진군 도암면 영파리를 강진읍으로 편입 • 해남군 송지면 월송리를 현산면으로 편입 • 해남군 마산면 북평리를 해남읍으로 편입 • 영암군 군서면 송평리를 영암면으로 편입 • 영암군 금정면 용산리를 신평면으로 편입

년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1973. 7. 1	대통령령 제6542호	시·군·구 읍·면간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안군 몽탄면 성암리를 무안면으로 편입 • 함평군 학교면 상옥리·금곡리·백호리·월송리를 대동면으로 편입 • 완도군 근외면 대야리를 완도면으로 편입 • 진도군 근내면 수성리·수류리·산월리·해창리를 진도면으로 편입 • 무안군 삼향면 석현리를 목포시에 편입 • 보성군 문덕면 한천리를 승주군 송광면에 편입 • 여천군 돌산면 경호리를 여수시에 편입 • 칠곡군 북삼면 낙계동을 선산군 구미읍으로 편입 • 의성군 금성면 광현동을 군위군 군위면으로 편입 • 달성군 화원면 대곡동을 월배면으로 편입 • 청송군 현서면 북동·덕성동·성재동을 안덕면으로 편입 • 영일군 오천면 신정리·금광동·일월동을 동해면으로 편입 • 영일군 송라면 덕천리를 청하면으로 편입 • 월성군 천북면 청령리를 안강읍으로 편입 • 성주군 대가면 중산동을 가천면으로 편입 • 금릉군 봉산면 북전동을 대항면으로 편입 • 문경군 호계면 봉정리를 상양면으로 편입 • 예천군 개포면 상동을 예천읍으로 편입 • 봉화군 법전면 소노리를 춘양면으로 편입 • 영일군 대송면 송정동·괴동동·송내동·동촌동·장흥동과 오천면·인덕동·청림동을 포함시에 편입 • 선산군 산동면 도산동을 군위군 소보면으로 편입 • 봉화군 상운면 내림리·두월리를 영주군 이산면으로 편입 • 남해군 이동면 상주리 일부를 통영군 옥지면으로 편입 • 함양군 안의면 춘전리·진목리를 거창군 남상면으로 편입 • 진양군 정촌면 옥산리·동물리를 문산면으로 편입 • 함안군 대신면 산서리를 가야면으로 편입 • 울주군 두서면 소호리를 언주군 상북면으로 편입 • 울주군 삼남면 구추리를 언천군 언양면으로 편입 • 고성군 마암면 가련리를 개천면으로 편입 • 고성군 동해면 감서리를 거류면으로 편입 • 산청군 신등면 상법리·철수리를 車黃面으로 편입 • 통영군 용남면 무전리를 충부시로 편입 • 창원군 창원면 상남리 용남면과 내서면의 구암리·합성리·회성리·두척 및 구산면의 예곡리·우산리·현동리·덕동리를 마산시에 편입 • 진양군 내동면 귀곡리, 정촌면 가좌리·호탄리를 진주시에 편입 • 창원군 웅천면을 진해시로 편입 • 웅진군 백령면 대청리를 관할구역으로 대청면 설치 • 익산군 북일면을 폐지하고 이리시에 편입 • 안동군 월곡면 나소동·가류동·도곡동·석강동을 와룡면에 편입
	대통령령 제7160호	대청면 설치 익산군·이리시 구역조정	
	대통령령 제7161호	안동군 관내면간 구역조정(안동군 월곡면을 폐지)	

년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p>대통령령 제7162호</p> <p>"</p> <p>"</p>	<p>서울특별시 강남구 설치</p> <p>부산시 남구 설치</p> <p>서울특별시 구간 경계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동군 월곡면의 석동동·노산동을 임하면에 편입 • 안동군 월곡면의 구룡동·계합동·정산동·기사동·미일동·사월동·미질동 일부를 임동면에 편입 • 안동군 예안면의 동부동·서부동·선양동 일부 및 부포동 일부를 도산면에 편입 • 안동군 예안면의 조천동·선양동 일부, 길안면 중 지례동·기동, 임하면중 망천동·현하동을 와룡면에 편입 • 성동구 중 명일동·하일동·고덕동·상일동·길동·둔촌동·암사동·성내동·풍납동·천호동·송파동·석촌동·삼정동·가락동·이동·오금동·방이동·문정동·장지동·거여동·마천동·잠실동·신천동·일원동·수서동·자곡동·울현동·세곡동·역이동·포이동·계포동·도곡동·논현동·신사동·학동·압구정동·청담동·삼성동·대치동·염곡동·내곡동·신언동·반포동·잠원동·서초동·양재동·우면동·원지동(48개 동) • 동구 관할구역 중 범일동 일부·부산진구 관할구역 중 문현 1,2,3동·범천3동·동래구 관할구역중 수영동·민락동·광안 1,2동·대연출장소 관할구역중 대연 1,2,3,4동·용연 1,2동·용당동·감만동·우암동·남천동을 관할구역으로 설치(19개 동) • 서대문구중 평창동·구기동·부암동·홍지동·신영동·행촌동·송월동·홍파동·평동 전역 및 교남동·교북동·현저동·충정로1가 각 일부를 종로구에 편입(충정로1가 일부→평동) • 동대문구중 송인동·창신동 전역 및 신설동 일부를 종로에 편입(신설동 일부→송인동) • 서대문구중 서소문동·정동·순화동·의주로2가·중림동과 의주로1가·충정로1가·합동·충정로3가·만리동 1,2가 각 일부를 중구에 편입(의주로1가 일부→미근동·충정로3가 일부→중림동·합동 일부→중림동) • 성동구중 황학동·무학동·흥인동과 신당동·상왕십리동 각 일부를 중구에 편입(상왕십리동 일부→황학동·상왕십리동 일부→신당동·신당동 일부→상왕십리) • 용산구중 한남동 일부를 중구에 편입(한남동 일부→신당동)성동구중 중곡동·능동·군자동 각 일부를 동대문구에 편입(중곡동·능동·군자동 각 일부→장안동)
<p>1973. 7. 1</p>	<p>대통령령 제7816호</p>	<p>서울특별시 구간 경계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구 중암동·인암동 4,5가·석관동 각 일부를 동대문구에 편입(중암동 일부→청량리동·중암동·인암동5가 각 일부→제기동·안암동 4,5가 각 일부→용두동·석관동 일부→이문동) • 동대문구 면목동·용현동·답십리동 각 일부를 성동구에 편입(면목동 일부→중곡동·용두동·답십리동 각 일부→용답동) • 동대문구 보문동 1,2,3,4,5,6,7가·신설동 각 일부를 성북구에 편입(신설동 일부→보문동6가) • 도봉구중 미아동 일부를 성북구에 편입(미아동 일부→길음동·미아동 일부→하월곡동)

년 월 일	법령 번호	변경 요지	변경 내역
1973. 7. 1	대통령령 제7816호	서울특별시 구간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북구중 정릉동·하월곡동 각 일부를 도봉구에 편입(정릉동·하월곡동 일부→미아동) •마포구중 동교동 일부를 서대문구에 편입(동교동 일부→창천동) •서대문구중 삼암동·성산동과 수색동·중동·남가좌동·연희동 각 일부를 마포구에 편입(수색동 일부→삼암동·남가좌동 일부→중동·연희동 일부→연남동) •서대문구중 만리동 1,2가 각 일부를 용산구에 편입(만리동 1,2가 각 일부→서계동) •중구중 동자동·도동 1,2가 각 일부를 용산구에 편입 •성동구중 옥수동 일부를 용산구에 편입(옥수동 일부→한남동) •관악구중 대방동·신대방동 각 일부를 영등포구에 편입(대방동·신대방동 각 일부→신길동) •영등포구 철산동 일부를 관악구에 편입(철산동 일부→신림동) •중구 신암동 일부, 서구 원대동 4,5,6가·노곡동·조아동을 북구에 편입 •북상면의 용곡리를 장성읍에 편입 •북상면의 수성리·경월리·조양리를 북이면에 편입 •북상면의 동현리·덕좌리·의운리·신성리를 북이면에 편입 •오정면 일원을 부천시에 편입
"	"	경북 대구시 구간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상면의 동현리·덕좌리·의운리·신성리를 북이면에 편입 •오정면 일원을 부천시에 편입
"	"	전남 장성군 북상면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상면의 동현리·덕좌리·의운리·신성리를 북이면에 편입 •오정면 일원을 부천시에 편입
"	대통령령 제7817호	경기도 김포군 오정면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정면 일원을 부천시에 편입
"	대통령령 제7817호	경북 경주시와 월성군간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북면 범곡리, 내남면 울동 배리, 천북면 북장리·손곡리, 외동면 신계리 일부를 경주시에 편입 •장수면 유희리의 망와도·저도를 진해시에 편입
"	"	경남 진해시와 거제군간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수면 유희리의 망와도·저도를 진해시에 편입
"	대통령령 제8668호	경남 울주군 온양면·온상면· 청량면간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양면 덕신리·청량면, 고암리·학남리를 온상면에 편입
"	"	서울특별시 강서구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등포구 염창동·목동·등촌동·화곡동·신월동·마곡동·가양면·내발산동·외발산동·공향동·방화동·개화동·과해동·오곡동·오창동 일원 및 신정동중 영등포구 신도림동 서단으로부터 구로동 서북 접경에 이르는 안양천(좌표: X= -2,694.5 k X= -2,987.0 k Y= +7,742.7 Y= +7,650.0 점을 연결하는 하천) 중심선 이동지역을 제외한 전역 •강남구 신천동 일부 (좌표: X= 448,800, X= 447,302 Y= 209,500, Y= 208,000를 성동구에 편입
"	"	성동구 강남구간의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구 신천동 일부 (좌표: X= 448,800, X= 447,302 Y= 209,500, Y= 208,000를 성동구에 편입
"	대통령령 제8667호	대전시 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구: 대전시 원동 인동·효동·천동·기오동·신흥동·판암동·삼정동·용운동·대동·자양동·신안동·소제동·기양동·용전동·성남동·홍도동·오정동·대화동·삼성동·정동·중동 일원 •서구:대전시 은행동·선화동·목동·중촌동·대흥동·문창동·석교동·옥계동·호동·대사동·부사동·용두동·오류동·태평동·유천동

년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1973. 7. 1	대통령령 제8758호	부산시 북구 설치	문화동·산성동·복수동·사정동·안영동·도마동·정림동·변동·용녀동·탄방동·삼천동·괴정동·내동·가상동·갈마동·둔산동·월평동 일원
"	"	부산시 區間 관할 구역 조정	• 부산진구: 구포동·금곡동·회명동·덕천동·만덕동·삼락동·모라동·덕포동·괘법동·감전동·주례동·학장동 일부·염인동을 관할하는 북구 설치
"	법률 제3014호	부산시 경산남도간 관할구역 조정 (부산시구역 확장)	• 부산진구 금성동을 동래구로 편입 • 부산진구 학정동 일부를 서구에 편입 • 김해군 대저읍 일원과 가락면의 대사리, 북정리 상덕리·제도리 일원 및 명지면의 중리·동리·진목리·조동리·평성리·신전동 일원을 부산시 북구에 편입
1979.5.1	대통령령 제9409호	구미시 설치	• 김해군 명지면 신호리 일원을 채산면에 편입 • 선산군 구미읍과 칠곡군 인동면을 합하여 구미시 설치
"	대통령령 제9409호	미금읍 설치	• 양주군 미금면을 읍으로 승격
"	"	평성읍 설치	• 평택군 평성면을 읍으로 승격
"	"	소하읍 설치	• 시흥군 서면을 읍으로 승격
"	"	군포읍 설치	• 시흥군 남면을 읍으로 승격
"	"	원당읍 설치	• 고양군 원당면을 읍으로 승격
"	"	광주읍 설치	• 광주군 광주면을 읍으로 승격
"	"	연천읍 설치	• 연천군 연천면을 읍으로 승격
"	"	포천읍 설치	• 포천군 포천면을 읍으로 승격
"	"	양평읍 설치	• 양평군 양평면을 읍으로 승격
"	"	용인읍 설치	• 용인군 용인면을 읍으로 승격
"	"	김포읍 설치	• 김포군 김포면을 읍으로 승격
"	"	횡성읍 설치	• 횡성군 횡성면을 읍으로 승격
"	"	평창읍 설치	• 평창군 평창면을 읍으로 승격
"	"	갈말읍 설치	• 칠원군 갈말면을 읍으로 승격
"	"	화천읍 설치	• 화천군 화천면을 읍으로 승격
"	"	양구읍 설치	• 양구군 양구면을 읍으로 승격
"	"	인제읍 설치	• 인제군 인제면을 읍으로 승격
"	"	간성읍 설치	• 고성군 간성면을 읍으로 승격
"	"	양양읍 설치	• 양양군 양양면을 읍으로 승격
"	"	괴산읍 설치	• 괴산군 괴산면을 읍으로 승격
"	"	단양읍 설치	• 단양군 단양면을 읍으로 승격
"	"	사천읍 설치	• 사천군 사천면을 읍으로 승격
"	"	청양읍 설치	• 청양군 청양면을 읍으로 승격
"	"	진안읍 설치	• 진안군 진안면을 읍으로 승격
"	"	무주읍 설치	• 무주군 무주면을 읍으로 승격
"	"	장수읍 설치	• 장수군 장수면을 읍으로 승격
"	"	임실읍 설치	• 임실군 임실면을 읍으로 승격
"	"	순창읍 설치	• 순창군 순창면을 읍으로 승격
"	"	합평읍 설치	• 익산군 합평면을 읍으로 승격
"	"	곡성읍 설치	• 곡성군 곡성면을 읍으로 승격
"	"	고흥읍 설치	• 고흥군 고흥면을 읍으로 승격
"	"	영암읍 설치	• 영암군 영암면을 읍으로 승격
"	"	무안읍 설치	• 무안군 무안면을 읍으로 승격
"	"	진도읍 설치	• 진도군 진도면을 읍으로 승격
"	"	달성읍 설치	• 달성군 월배면을 읍으로 승격
"	"	군위읍 설치	• 군위군 군위면을 읍으로 승격
"	"	청송읍 설치	• 청송군 청송면을 읍으로 승격
"	"	영양읍 설치	• 영양군 영양면을 읍으로 승격

년 월 일	법령 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1979.10.1	대통령령 제4930호	영덕읍 설치	•영덕군 영덕면을 읍으로 승격
		화양읍 설치	•청도군 화양면을 읍으로 승격
		고령읍 설치	•고령군 고령면을 읍으로 승격
		성주읍 설치	•성주군 성주면을 읍으로 승격
		선산읍 설치	•선산군 선산면을 읍으로 승격
		봉화읍 설치	•봉화군 봉화면을 읍으로 승격
		울진읍 설치	•울진군 울진면을 읍으로 승격
		울릉읍 설치	•울릉군 남면을 읍으로 승격
		의령읍 설치	•의령군 의령면을 읍으로 승격
		가야읍 설치	•함안군 가야면을 읍으로 승격
		양산읍 설치	•양산군 양산면을 읍으로 승격
		신현읍 설치	•거제군 신현면을 읍으로 승격
		남해읍 설치	•남해군 남해면을 읍으로 승격
		산청읍 설치	•산청군 산청면을 읍으로 승격
		협천읍 설치	•협천군 협천면을 읍으로 승격
	서울특별시 은평구 설치	•서대문구 녹번동·불광동·갈현동·구산동·대조동·응암동·역촌동·신사동·중산동·진관내동·진관외동·구파발동·수색동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은평구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설치	•강남구중 하일동·상일동·명일동고덕동·암사동·천호동·성내동·풍납동·길동·둔촌동·거여동·마천동·방이동·이동·오금동·송파동·석촌동·가락동·문정동·잠실동·신천동 일원과 삼성동·삼전동·수서동·자곡동·울곡동 및 장지동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강동구 설치	

라. 1980年代

법률 제3963호(1987.11.28 공포)로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변경 및 송정시·광산군의 폐지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인해 全羅南道의 송정시와 광산군 일원을 광주시에 편입하고 송정시와 광산군을 폐지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에 대비하고 주민편의증진 및 지역의 여망에 부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부산·대구·인천·대전시의 인구가 과다한 구를 분구하고 부천시에 구제를 실시하였으며, 울산시 방어진 출장소를 구로 개편하는 등 대도시의 인구급증에 따른 行政區域 規模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12367호(1987.12.31)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등 13개 구설치와 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강동구를 강동구와 송파구로, 동대문구를 동대문구와 중랑구로, 도봉구를 도봉구와 노원구로, 강남구를 강남구와 서초구로, 강서구를 강서구와 양천구로, 부산직할시의 동래구를 동래구와 금정구로, 대구직할시의 서구를 서구와 달서구로, 인천직할시의 남구를 남구와 남동구로, 북구를 북구와 서구로, 대전시의 중구를 중구와 서구로 분구하고, 부천시에는 일반구인 중구와 남구를 신설하였으며, 울산시의 방어진출장소를 동구로 개편하고, 서울특별시의 구간 행정구역 경계를 일부 변경조정하여 구로구의 일부지역을 강서구와 관악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였다. 1989년에는 법률 제4051호(1988.12.31)로 부산직할시 강서구 설치 및 시도의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 부산·인천직할시의 관할구역에 주변의 일부

지역을 편입함으로써 필요한 도시시설의 용지를 확보하고 해당지역의 도시발전기반을 확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확장하였다. 또한 법률4049호 (1988. 12.31)로 중부지역의 중심도시인 대전시를 정부의 직할시로 승격시켜 중부권의 행정·과학·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1989년 1월 1일부터 직할시로 출범을 했다. 1980년대에 이루어진 행정구역개편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表 1-3-7) 1980年代의 地方行政區域 變遷狀況

연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1987.1.1	대통령령 제12007호	시군구간 41개소 읍면간 63개소의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중구 명주동 일부 → 동구 • 부산 남구 망미동 일부 → 동래구 • 부산 동래구 연산동 일부 → 남구 • 대구 동구 연경동 → 북구 • 대구 동구 신암동 일부 → 북구 • 대구 수성구 가천동 일부 → 동구 • 대구 서구 성당동, 본리동 일부 → 남구 • 대구 남구 송현동, 월성동 각 일부 → 서구 •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부 → 안양시 • 경기 화성군 양감면 고념리 → 평택군 청북면 • 경기 화성군 매송면 금곡리, 호매실리-수원시 • 경기 평택군 서탄면 적봉리 일부 → 송탄시 • 경기 파주군 광탄면 기산리 일부 → 양주군 • 경기 여주군 흥천면 양촌리 → 대신면 • 경기 화성군 서신면 칠곡리 → 송산면 • 경기 화성군 동탄면 금곡리 일부 → 오산읍 • 경기 화성군 팔탄면 지월리 일부 → 향남면 • 경기 고양군 송포면 덕이리 일부 → 일산읍 • 경기 고양군 원당읍 도내리 일부 → 화전읍 • 경기 고양군 원당읍 원당리 일부 → 벽제읍 • 경기 고양군 일산읍 산황리 일부 → 원당읍 • 경기 연천군 미산면 석장리 → 백학면 • 경기 안성군 삼죽면 동평리, 남풍리, 사현리 → 보개면 • 경기 안성군 보개면 양북리 일부 → 금광면 • 경기 김포군 계양면 노오지리 일부 → 고촌면 • 강원 삼척군 원덕읍 용화리, 장호리 일부 → 근덕면 • 충북 청원군 강내면 정봉리, 신촌리 → 청주시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죽림리 → 청주시 • 충북 충원군 살미면 목벌리 → 충주시 • 충북 제원군 한수면 서운리, 포탄리, 함암리, 명오리, 호운리, 사기리 → 증원군 •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자작리 → 제천시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중초리, 노치리, 용암리, 봉평리, 장곡리, 산성리 → 보은읍 • 충북 보은군 회남면 노성리 → 수한면 •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금산리 → 매향읍 • 충남 대전시 동구 오정동 일부 → 중구 • 충남 대전시 중구 삼천동 일부 → 동구 • 충남 대덕군 진작면 계산리 → 대전시 • 충남 공주군 이인면 검평리 → 공주시 • 충남 아산군 배방면 공수리 일부 → 온양시

년 월 일	법령 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1987.1.1	대통령령 제12007호	시군구간 41개소 읍면간 63개소의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연기군 전동면 신방리, 영당리 → 양곡면 • 충남 연기군 달천리, 다방리, 금사리 → 전의면 • 충남 공주군 탄천면 신영리 → 이인면 • 충남 공주군 신평면 만천리 → 유구면 • 충남 논산군 은진면 내동리, 양산리, 권축리 → 논산읍 • 충남 아산군 탕정면 구령리 → 배방면 • 전북 완주군 조촌읍 → 전주시 • 전북 남원군 송동면 장곡리 일부 → 남원시 • 전북 남원군 대강면 입암리 일부 → 순창군 • 전북 정읍군 산내면 종성리 일부 → 임실군 • 전북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일부 → 정읍군 • 전북 완주군 비봉면 수선리 일부 → 화산면 • 전북 남원군 송동면 신평리, 흑송리, 장곡리 → 주생면 • 전북 남원군 송동면 세전리, 양평리 각 일부 → 금지면 • 전북 정읍군 소성면 만수리 → 고부면 • 전북 진안군 정천면 용평리 → 상전면 •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운산리 → 진안읍 • 전북 김제군 봉남면 구정리 일부 → 금산면 • 전북 익산군 망성면 어심리 일부 → 량산면 • 전북 정읍군 이평면 도계리 → 덕천면 • 전북 정읍군 이평면 청량리 일부 → 영원면 • 전북 정읍군 감곡면 용곡리 일부 → 신태인읍 • 전북 정읍군 정우면 장학리 일부 → 북면 • 전북 정읍군 정우면 산북리 일부 → 신태인읍 • 전북 고창군 고수면 봉리 일부 → 고창읍 • 전북 고창군 신흠면 송암리 → 흥덕면 • 전북 고창군 성송면 상곡리 → 대산면 • 전북 고창군 상하면 송곡리 일부 → 해리면 • 전북 익산군 망성면 화산리 일부 → 용동면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대양리, 옥암리 → 목포시 • 전남 여천시 묘도동 일부 → 광양군 태금면 • 전남 송주군 해룡면 복성리 일부 → 광양군 광양읍 • 전남 여주시 경호동 일부 → 여천시 • 전남 여천군 화양면 용주리 일부 → 여천시 •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가리 일부 → 엄다면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성남리 일부 → 엄다면 • 전남 영광군 염산면 월흥리, 반안리 → 군남면 • 전남 진도군 임치면 염장리 → 진도읍 • 전남 광양군 봉강면 지곡리 → 광양읍 • 전남 광양군 옥곡면 광영리 → 골약면 • 경북 영일군 대송면 호동 등 일부 → 포항시 • 경북 월성군 견곡면 금대리 일부 → 경주시 • 경북 영천군 임고면 언하동, 신기동 → 영천시 • 경북 영천군 청룡면 죽정동 일부 → 경산군 • 경북 경산군 와촌면 계당동 일부 → 영천군 • 경북 선산군 도개면 청산동 → 의성군 • 경북 의성군 단밀면 용산동 → 선산군 • 경북 선산군 장천면 석우동 → 칠곡군 • 경북 안동군 풍산읍 단호동 → 탑후면 • 경북 안동군 와룡면 서현동 일부 → 북후면 • 경북 청송군 부동면 토평동 일부 → 부남면
1987.1.1	대통령령 제12007호	시군구간 41개소 읍면간 63개소의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정읍군 소성면 만수리 → 고부면 • 전북 진안군 정천면 용평리 → 상전면 • 전북 진안군 상전면 운산리 → 진안읍 • 전북 김제군 봉남면 구정리 일부 → 금산면 • 전북 익산군 망성면 어심리 일부 → 량산면 • 전북 정읍군 이평면 도계리 → 덕천면 • 전북 정읍군 이평면 청량리 일부 → 영원면 • 전북 정읍군 감곡면 용곡리 일부 → 신태인읍 • 전북 정읍군 정우면 장학리 일부 → 북면 • 전북 정읍군 정우면 산북리 일부 → 신태인읍 • 전북 고창군 고수면 봉리 일부 → 고창읍 • 전북 고창군 신흠면 송암리 → 흥덕면 • 전북 고창군 성송면 상곡리 → 대산면 • 전북 고창군 상하면 송곡리 일부 → 해리면 • 전북 익산군 망성면 화산리 일부 → 용동면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대양리, 옥암리 → 목포시 • 전남 여천시 묘도동 일부 → 광양군 태금면 • 전남 송주군 해룡면 복성리 일부 → 광양군 광양읍 • 전남 여주시 경호동 일부 → 여천시 • 전남 여천군 화양면 용주리 일부 → 여천시 •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가리 일부 → 엄다면 •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성남리 일부 → 엄다면 • 전남 영광군 염산면 월흥리, 반안리 → 군남면 • 전남 진도군 임치면 염장리 → 진도읍 • 전남 광양군 봉강면 지곡리 → 광양읍 • 전남 광양군 옥곡면 광영리 → 골약면 • 경북 영일군 대송면 호동 등 일부 → 포항시 • 경북 월성군 견곡면 금대리 일부 → 경주시 • 경북 영천군 임고면 언하동, 신기동 → 영천시 • 경북 영천군 청룡면 죽정동 일부 → 경산군 • 경북 경산군 와촌면 계당동 일부 → 영천군 • 경북 선산군 도개면 청산동 → 의성군 • 경북 의성군 단밀면 용산동 → 선산군 • 경북 선산군 장천면 석우동 → 칠곡군 • 경북 안동군 풍산읍 단호동 → 탑후면 • 경북 안동군 와룡면 서현동 일부 → 북후면 • 경북 청송군 부동면 토평동 일부 → 부남면

년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1989.1.1	장관승인·조례	읍면동간 경계조정(4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기산동, 석보면 양구동 → 영양읍 • 경북 영양군 입암면 방전동 일부 → 석보면 • 경북 월성군 양북면 봉길리 일부 → 양남면 • 경북 경산군 압량면 조영동, 남방동, 내동, 여천동, 유곡동, 신천 점촌동, 평산동, 사동, 삼풍동, 갑제동 → 경산읍 • 경북 고령군 개진면 양전동 일부 → 고령읍 • 경북 상주군 공검면 하흘리 → 은척면 • 경북 영일군 연일읍 오천동 일부 → 대송면 • 경남 진양군 집현면 덕오리 일부 → 금산면 • 경남 진양군 대곡면 와룡리 일부 → 금산면 • 경남 진양군 금산면 가방리 일부 → 대곡면 • 경남 양산군 양산읍 남부동 일부 → 물금면 • 경남 양산군 동면 석산리, 금산리 각 일부 → 물금면 • 경남 울주군 온산면 용암리 일부 → 청량면 • 경남 거제군 일운면 옥림리 일부 → 장승포읍 • 경남 합천군 봉산면 죽죽리 → 용주면 • 경북 예천군 감천면 미석리 일부 → 영풍군 • 경북 상주군 함창면 윤직리 일부 → 점촌시 • 경북 영천군 청룡면 서산리 → 영천시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신장리 → 선산군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오산리 일부 → 의령군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 의령군 • 경남 함안군 여항면 산서출장소 → 의창군 • 서울 중랑구 중화2동 → 동대문구 • 서울 노원구 창동·도봉동 → 도봉구 • 서울 서초구 도곡동 일부 → 강남구 • 서울 강남구 포이동 일부 → 서초구 • 부산 동래구 락민동 일부 → 안락동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부 → 범전동 • 부산 남구 문현동 일부 → 대연동 • 부산 동래구 락민동·안락동 일부 → 칠산동 • 부산 서구 초장동 일부 → 토성3가 • 부산 사하구 장림동 일부 → 신평동 •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일부 → 괴정동 • 경기 남양주군 초안면 시우리 일부 → 와부읍 • 경기 파주군 교하면 상지석리 → 조리면 • 경기 김포군 하성면 하사리 일부 → 통진면 • 강원 속초시 장사동 일부 → 영랑동 • 강원 속초시 교동 일부 → 청학동 •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 안흥면 • 강원 평창군 도암면 호명리 → 진부면 • 강원 정선군 임계면 봉정리 → 북면 • 강원 양양군 손양면 하평리·소현동 일부 → 양양읍 • 강원 강릉시 송정동 일부 → 포남동 • 충북 청주시 수동 일부 → 북문로2가 및 문화동 • 충북 청주시 내덕동 일부 → 우암동·서천동·울랑동 • 충북 청주시 사창동·모충동·운천동·신봉동 → 사직동 • 충북 청주시 가경동·개신동 → 복대동 • 충북 충주시 달천동 일부 → 봉방동

년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1988.1.1	법률 제3963호 대통령령 제12367호	전남 송정시, 광산군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등 13개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충주시 달천동 일부 → 역전동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화리 일부 → 북이면 • 충북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일부 → 남이면 • 충북 청원군 낭성면 성대리 → 미원면 • 충북 영동군 해곡면 광명리 → 황간면 • 충북 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 칠성면 • 충북 증원군 상모면 문강·토계리 → 실미면 • 충북 단양군 대장면 9개리 → 단양읍 • 충남 온양시 보옥동 일부 → 온천동 • 충남 천원군 입장면 도하리 → 성환읍 • 충남 정읍군 정우면 장학리 → 북면 • 경북 영천군 화북면 2개리 → 화남면 • 경북 군위군 소노면 대흥리 → 군위읍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어산리 → 초전면 • 전남 송정시·광산군을 광주직할시에 편입 • 광주직할시에 광산구를 설치 ① 구 설치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강동구·송파구 • 동대문구 → 동대문구·종로구 • 도봉구 → 도봉구·노원구 • 강남구 → 강남구·서초구 • 강서구 → 강서구·양천구 • 부산직할시 • 동래구 → 동래구·금정구 • 대구직할시 • 서구 → 서구·달서구 • 인천직할시 • 남구 → 남구·남동구 • 북구 → 북구·서구 • 대전시에 서구 설치 • 부천시에 구제 실시 • 중구·남구 설치 • 울산시에 동구(방어진출장소) 설치 ② 서울특별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 구로구 고척동 일부 → 강서구 • 구로구 독산동 일부 → 관악구 • 경기 수원시에 장안구·권선구 설치
1988.7.1	장관승인 수원시조례	경기도 수원시 구 설치	
1989.1.1	대통령령 제12557호	시군자치구간 경계조정(3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일부 → 동구·남구 • 인천 동구 금곡동 일부 → 중구 • 인천 남구 주안동 일부 및 관교동 일부 → 남동구 •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부 → 남구 •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부 → 남구 • 인천 북구 십정동 일부 → 남동구 •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부 → 북구 • 경기 포천군 관인면 부곡리 → 연천군 • 강원 명주군 강동면 운산리 → 강릉시 • 충북 증원군 이류면 민정리 일부 → 충주시 • 충북 제원군 금성면 대랑리 일부 → 제천시 • 충북 보은군 회북면 3개리 → 청원군 • 충북 보은군 회남면 염치리 → 청원군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오덕리 일부 → 보은군 • 충북 증원군 산척면 원월리 → 제원군

년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1989.1.1	법률 제4049호	대전직할시 승격 시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아산군 염치면 석정리 일부 → 온양시 • 충남 온양시 신동 → 아산군 • 충남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 → 홍성군 • 전북 완주군 용진면 2개리 → 전주시 • 전북 완주군 구이면 4개리 → 전주시 • 전북 옥구군 미성읍 일원 → 군산시 • 전북 옥구군 옥도면 2개리 → 군산시 • 전북 정읍군 입암면 신정리 → 정주시 • 경북 성주군 용암면 2개리 → 선남면 • 경남 울산시 동구 화정동 일부 → 전하동 • 경남 의령군 지정면 유곡리 일부 → 부림면 • 경남 의령군 봉수면 서덕리 일부 → 부림면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일부 → 미조면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술상리 → 진교면 • 대전시 및 대덕군 일원을 대전직할시로 승격 • 유성구·대덕구 설치
1989.1.1	법률 제405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설치('88.12.31 공포) • 화성군 오산읍 → 오산시 • 시흥군 의왕읍 → 의왕시 • 시흥군 군포읍 → 군포시 • 시흥군 소래읍 수암면·군자면 → 시흥시 • 남양주군 미금읍 → 미금시 • 광주군 동부읍·서부면과 중부면 상산곡리 → 하남시 • 서산군 서산읍 → 서산시 • 김제군 김제읍·월촌면·백산면 3개리, 봉남면 월성리·황산면 3개리 → 김제시 • 광양군 골약면·태금면 → 동광양시 • 경산군 경산읍 → 경산시 • 밀양군 밀양읍 → 밀양시 • 거제군 장승포읍 → 장승포시 ② 충남 서산군을 분리 태안군 설치 ③ 강원 원성군 → 원주군으로 명칭변경 ④ 경북 월성군 → 경주군으로 명칭변경 * 시흥군·대덕군 폐지 • 부산 북구 일부, 경남 김해군 가락면, 녹산면 및 의창군 천가면 → 부산 강서구 • 경기 김포군 계양면 → 인천 북구 • 경기 용진군 영종면·용유면 → 인천 중구 • 3개읍 16개면 설치 •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 부발읍 •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 법원읍 •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면 → 진접읍 • 경기도 남양주군 별내면 퇴계원출장소 → 퇴계원면 • 경기도 평택군 안중출장소 → 안중면 •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산북출장소 → 산북면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원당출장소 → 장남면 •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신촌출장소 → 동내면 •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발산출장소 → 남면 * 기존의 남면을 남산면으로 개칭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강림출장소 → 강림면 • 강원도 삼척군 도계읍 신기출장소 → 신기면 • 충청남도 보령군 주포면 주교출장소 → 주교면
1989.1.1	법률 제4051호	구설치 및 시도간 경계조정	
1989.4.1	장관승인·조례	읍·면 설치	

년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1989.5.1	장관승인·조례	일반시 구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읍 서부출장소 → 옥서면 •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경천출장소 → 경천면 • 전라남도 완도군 김일읍 생일출장소 → 생일면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마량출장소 → 마량면 • 경상북도 상주군 화북면 남부출장소 → 화남면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갈사출장소 → 금성면 •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삼동출장소 → 삼동면
	"	일반시 출장소설치 읍면설치(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성남시에 수정구·중원구 설치 • 전북 전주시에 완산구·덕진구 설치 • 경남 마산시의 회원·합포출장소 설치 • 충북 아산군 염치읍 설치 • 경북 의성군 안사면 설치
1990.4.1	"	법정동명칭변경 (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직할시 광산구 노산동 → 노선동 • 충북 청주시 농촌동 → 성화동 • 경남 진주시 망경남동 망경북동 → 망경동 • 경남 진주시 상봉동동 상봉서동 → 상봉동 • 경남 진주시 수정남동·수정북동 → 수정동 • 경남 진주시 상평동동·상평서동 → 상평동 • 경남 진주시 초전남동·초전북동 → 초전동 • 경남 진주시 이현남동·이현북동 → 이현동 • 경남 진주시 판문남동·판문북동 → 판문동 • 경남 진주시 옥봉남동·옥봉북동 → 옥봉동
	"	읍면동간 경계조정(4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일부 → 당감동 • 인천 남동구 도림동 일부 → 남촌동 •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일부 → 남촌동 •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일부 → 남촌동 • 인천 남동구 도림동 일부 → 논현동 •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일부 → 논현동

마. 1990年代

과거 우리나라의 행정구역개편은 시를 도에서 분리하여 廣域市로 승격시키거나, 읍을 군에서 분리하여 시로 승격시킴으로써 중심도시와 배후도시 또는 배후농촌을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는 도농분리적 접근이 그 중심을 이루어 왔다. 이에 따라 行政區域과 生活圈과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지역이기주의의 발생, 행정기관의 분리에 의한 인력낭비, 시·군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의 발생, 군지역의 공동화현상, 행정구역의 제약으로 인한 각 지역의 장기발전의 제약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중심지의 읍이 시로 승격된 잔여군지역에 있어서는 발전의 구심점을 상실한 채 지역경제활동의 침체, 인구의 지속적 감소현상이 나타나 이로 인해 동일한 생활권내에서 농어촌의 공동화현상과 시지역의 과밀화 및 토지부족현상이 병존하는 양상이 전개되었으며, 잔여군의 행·재정적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둘째, 동일생활권내 읍을 군에서 시로 분리·승격시킴으로써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되는 현상이 야기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간의 일체감과 연대의식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군간 갈등으로 지역단위 종합개발이나 廣域行政遂行을 어렵게 하였다. 셋째, 도농분리로 일반행정비의 중복과다지출이 불가피

하여 行政能率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넷째, 도농분리는 대부분 도시지역 위주로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잔여군 지역에는 지리·공간적 구조상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도농복합시제도는 이러한 도농분리형이 지닌 문제점을 극복하여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광역적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되었다.

1990년대의 주요 行政區域 改編內容을 살펴보면, 내무부공고 제89-7호(89.4.26)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중원구)와 전라북도의 전주시(완산구·덕진구)에 각각 2개구를 설치하고, 내무부공고 제90-15호(1990.6.5)로 경상남도 마산시의 합포·회원출장소를 합포·회원구로 승격시키고, 전라남도 고흥군에는 동일면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1990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13046호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용지의 확보와 간척사업으로 인한 육지와의 연결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가피한 7개지역의 行政區域을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行政能率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충북 청주시의 관할구역 변경은 청원군 북일면, 남일면, 남이면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 전북 전주시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이서면의 2개리를 편입시키고, 전남 고흥군 동강면에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의 일부를 편입, 강진군 도암면에 해남군 옥천면 봉화리를 설치하고, 진도군 진도읍 관할구역에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리 일부를 편입하였다. 그리고 1990년 12월 14일(내무부공고 제90-46호)에는 충북 영동군 황금면의 명칭을 추풍령면으로 명칭변경을 하고, 법률 제4274호(1990.12.31) 충청북도 제원군등 4개군의 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 바, 4개군의 명칭변경을 살펴보면 충북 제원군을 제천군으로, 충남 청원군을 천안군으로, 경남 울주군을 울산군으로, 의창군을 창원군으로 군의 명칭을 각각 변경·시행하였으며, 1991년도에는 내무부공고 제91-40호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3개읍을 설치(경기 남양주군 화도읍, 충남 서산군 대산읍, 경남 양산군 웅상읍) 하였다. 그리고 1991년 12월 9일에는 내무부령 제547호로 시설치의 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기로 했다. 그 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명칭변경·경계 변경·시가지구성 지역의 범위, 도시적 산업종사자구의 범위, 시설치의 기준, 자치구가 아닌 구·면·동의 설치의 승인기준,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행정구역의 조정대상 조사, 승인신청 서식 등의 개정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률 제4417호(1991.12.14)로 신도시 건설등으로 급속한 都市化·産業化 추세에 있는 고양군 일원을 고양시로 승격시켜 도시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의 역사성 및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강원도 춘성군을 춘천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1992년 2월 1일부터 춘천군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1992년 3월 1일에는 경북 달성군 화원면을 화원읍으로 설치하고, 1993년도에 내무부공고 제1993-6호(1993.11.1)에는 대전 서구 둔산신도시 건설에 따라 전통지명 계승을 위해 대전 서구에 만년동을 설치하고, 내무부공고 제1993-66호(1993.9.18) 전북 장수군 계내면을 장수군의 역사적 유래와 지역적 지명도에 부합되도록 장계면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며, 1993년 11월 19일(대통령령제14006호)자로 아파트 단지의 조성이나 택지조성사업 및 경지정리사업 등의 추진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된 지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부산 중구 영주동의 일부를 동구에 편입하고, 광주 광산구 금호동의 일부를 서구에 편입, 충남 논산군 상월면의 일부를 공주군에, 경남 진해시 안부 동의 일부를 거제군에 편입했다. 1995년 1월 1일자(내무부공고 제1994-97호, 내무부공고 제1994-37호) 로 충남 연기군 소정출장소를 소정면으로, 충북 청주시 상당·홍덕출장소를 상당구와 홍덕구로, 경북 포항시에는 남구와 북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처리하여야 하는 상·하수도, 교통, 환경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生活圈이 동일한 33개시와 32개군을 통합하여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법률 제4774호(1994.8.3)로 설치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통합시가 출범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경기도 남양주시(미금시+남양주군), 강원도 4개시(춘천시+춘천군→춘천시, 원주시+원주군→원주시, 강릉시+명주군→강릉시, 삼척시+삼척군→삼척시), 충북 2개시(충주시+증원군→충주시, 제천시+제천군→제천시), 충남 4개시(공주시+공주군→공주시, 대천시+보령군→보령시, 온양시+아산군→아산시, 서산시+서산군→서산시), 전북 4개시(군산시+옥구군→군산시, 정주시+정읍군→정읍시, 남원시+남원군→남원시, 김제시+김제군→김제시), 전남 2개시(순천시+승주군→순천시, 나주시+나주군→나주시), 경북 10개시(포항시+영일군→포항시, 경주시+경주군→경주시, 김천시+금릉군→김천시, 안동시+안동군→안동시, 구미시+선산군→구미시, 영주시+영풍군→영주시, 영천시+영천군→영천시, 상주시+상주군→상주시, 점촌시+문경군→문경시, 경산시+경산군→경산시), 경남 6개시(창원시+창원군 3개면(대산·동면·북면)→창원시, 마산시+창원군 5개면(내서면,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마산시, 진주시+진양군→진주시, 통영시+통영군→통영시, 밀양시+밀양군→밀양시, 장승포시+거제군→거제시)이다. 대통령령 14434호(1994.12.22)로 시·군·자치구의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일부를 중랑구에 편입하는 등 자치구간 7개지역의 경계를 조정하고,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부를 북구에 편입하는 등 자치구간 2개지역을, 광주 북구 두암동 일부를 동구에 편입하는 등 자치구간 3개지역을, 대전 대덕구 비래동 일부를 동구에 편입하는 등 자치구간 8개지역을,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일원을 경기도 수원시에 편입하는 등 5개도의 시·군간 총22개 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였다. 법률 제4802호(1994.12.22)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9개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 구역변경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3) 성동구→성동구, 광진구, 도봉구→도봉구·강북구, 구로구→구로구·금천구, 부산(3) 남구→남구·수영구, 북구→북구·사상구, 동래구→동래구·연제구, 인천(2) 남구→남구·연수구, 북구→부평구·계양구, 광주(1) 서구→서구·남구로 하고, 또한 동일자 법률 제4801호(1994.12.22) 「전라남도 광양시등 2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전남 광양시+광양군→광양시, 경남 울산시+울산군→울산시로 하였다. 같은날 법률 제4796호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시를

설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되게 되는 경우 군지역의 주민이 농어촌지역 주민으로서의 혜택이 상실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농어촌지역 및 그 주민에 대하여 기존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발을 지원하는 등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14486호(1994.12.31)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상훈법 시행령등 중개개정령」을 개정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회에는 농어촌발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교부세법시행령중 읍면지역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는 군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중학교의 무교육실시, 보험급여의 본인부담액을 시의 읍면지역은 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하고, 도시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상주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에만 負擔金을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다. 1995년 3월 2일 내무부공고 제1995-13호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에 15 개읍을 설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원(2) : 춘천시 신북면→신북읍, 원주시 문막면→문막읍
- 충북(2) : 충주시 주덕면→주덕읍, 제천시 봉양면→봉양읍
- 충남(2) : 공주시 유구면→유구읍, 보령시 웅천면→웅천읍
- 전북(2) : 남원시 운봉면→운봉읍, 김제시 만경면→만경읍
- 전남(1) : 나주시 남평면→남평읍
- 경북(1) : 김천시 아포면→아포읍
- 경남(5) : 창원시 동면→동읍, 마산시 내서면→내서읍, 진주시 문산면→문산읍, 통영시 신양면→신양읍, 울산시 농소면→농소읍

내무부공고 제1995-20호(1994.12.22)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과 금천구 가산동의 법정동 명칭변경을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14629호(1995.4.20)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이르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의 일부를 강북구에 편입,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의 일부를 서구에 편입,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의 일부를 북구에 편입, 경기도 시흥시 화정동 일부를 안산시에 편입하는 등 자치구간, 시군간의 경계를 조정하여 1995년 4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다. 내무부공고 제1995-48호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오남면을 설치하여 1995년 4월 25일부터 시행운영하였다. 법률 제4948호 「경기도 평택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군통합을 추진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경기도 송탄시와 평택시 그리고 평택군을 통합하여 평택시로, 충남 천안시와 천안군을 통합하여 천안시로, 전북 이리시와 익산군을 통합하여 익산시로, 경남 삼천포시와 사천군을 통합하여 사천시로 하고, 김해군과 김해시를 통합하여 김해시로 하여 1995년 5월 10일부터 통합시로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법률 제4994호(95.12.6)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그 지역으로는 경기도 3개시(파주군을 파주시로, 이천군을 이천시로, 용인군을 용인시로)와 충남 1개시(논산군을 논산시), 그리고 경남 1개시(양산군을 양산시)를 합하여 1996년 3월 1일부터는 5개의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새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리고 동일자로 경기도 북부지역의 신도시개발 및 서울의 배후도시로 급격한 人口增加 및 行政需要의 증가등으로 고양시에 덕양구와 일산구를 설치하

여 운영되고 있다. 끝으로 내무부공고 제1996-6호로 경기도 안산시 동동을 대부동, 북동을 대부북동, 남동을 대부남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태평양시대를 맞아 울산시가 국제경제권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동남권 지역 경제의 중심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의 均衡開發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승격시키고, 기초자치단체인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을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법률제5243호)을 제정하여, 1997년 7월 15일자로 광역시로 출범하게 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行政區域現況은 1특별시, 6광역시, 9개도인 광역자치단체와 시72·군91·구90, 읍195·면1,230·동2,229개로 90년대이후의 행정구역변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圖 1-3-8) 1990年代의 地方行政區域 變遷狀況

연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1990.7.1	장관승인·조례	일반시의 구 및 면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마산시 합포·회원구 설치 전남 고흥군 동일면 설치
1990.8.17	대통령령 제13046호	시군구간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 동구 홍도동 일부 → 대덕구 오정동 충북 청원군 북일면 일부 남일면 일부 → 청주시 남이면 일부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일부 → 전주시 전북 김제군 봉남면 일부 → 김제시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도리 일부 → 고흥군 동강면 전남 해남군 옥천면 일부 → 강진군 도암면 전남 신안군 장산면 마진도리 일부 → 진도군 진도읍 인천 서구 신현동 일부 → 석남동 인천 서구 석남동 일부 → 가좌동 대전 서구 정림동 일부 → 복수동 대전 유성구 구암동 일부 → 장대동 대전 유성구 장대동 일부 → 구암동 강원 춘천시 효자동 일부 → 후평동 강원 원주시 단구동 일부 → 명륜동 강원 원주시 단구동 일부 → 개운동 강원 원주시 우산동 일부 → 학성동 강원 원주시 우산동 일부 → 태장동 강원 원주시 명륜동 일부 → 원동 강원 원주시 원동 일부 → 명륜동 강원 동해시 부곡동 일부 → 발한동 강원 속초시 장천동·사진동 일월 → 장사동 충북 청원군 가덕면 노현리 → 문의면 충북 옥천군 안남면 오대리 일원 충북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일부 → 옥천읍 전북 정주시 상동 일부 → 시기동 전북 정주시 연지동 일부 → 시기동 전북 정주시 상평동 일부 → 시기동 전북 정주시 시기동 일부 → 상동 전북 정주시 하모동 일부 → 연지동 전북 정주시 삼산동 일부 → 상평동 전북 정주시 장영동 일부 → 수성동 전북 남원시 도통동 일부 → 동충동 전북 남원시 동충동 일부 → 죽항동

년 월 일	법령 번호	변경 요지	변경 내역
1991.1.1	법률 제4274호	군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남원시 천거동 일부 → 쌍교동 • 전북 남원시 천거동 일부 → 금동 • 전북 임실군 관촌면 금성리 일원 → 임실읍 • 전북 남원군 송동면 양평리 일부 → 김지면 • 전북 정읍군 태인면 오류리 일부 → 북면 • 전남 순천시 풍덕동 일부, 장천동 일부 → 남제동 • 전남 순천시 남제동 일부 → 풍덕동 • 전남 담양군 남면 외동리 일원 → 창평면 • 경북 선산군 도개면 신림리 일부 → 해평면 • 경남 의창군 동면 죽동리 일부 산남리 일부 → 대신면 • 충북 제원군 → 제천군 • 충남 천원군 → 천안군 • 경북 울주군 → 울산군 • 경남 의창군 → 창원군
1991.7.1 1991.7.19	장관승인 · 조례 장관승인 · 조례	면명칭변경 시의 동간경계 조정(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영동군 황금면을 추풍령면으로 명칭변경 • 충북 제천시 동현동 일부 → 남천동 • 충북 제천시 화산동 일부 → 동현동 • 충북 제천시 동현동 일부 → 화산동 • 충북 제천시 청전동 일부 → 장락동 • 충북 제천시 장락동 일부 → 청전동 • 경남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일부 → 양덕동
1991.9.10	장관승인 · 조례	시의 동간경계 조정(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남구 주안동 일부 → 관교동 • 인천 남구 관교동 일부 → 주안동 • 인천 남구 연수동 일부 → 선학동 •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일부 → 만수동 • 인천 북구 부평동 일부 → 갈산동 • 인천 북구 부개동 일부 → 갈산동 • 인천 북구 삼산동 일부 → 갈산동 • 충북 청주시 가경동 일부 → 복대동 • 충북 청주시 개신동 일부 → 복대동 • 충북 청주시 가경동 일부 → 개신동 • 충북 청주시 복대동 일부 → 가경동 • 충북 청주시 개신동 일부 → 가경동 • 충북 청주시 서천동 일부 → 울양동 • 충북 청주시 주중동 일부 → 울양동 • 충북 청주시 주성동 일부 → 울양동
1991.9.17	장관승인 · 조례	일반시의 구설치 면의 읍승격(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설치 •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을 화도읍 승격 • 충남 서산군 대신면을 대신읍 승격 • 경남 양산군 웅상면을 웅상읍 승격 • 경북 영월군 지행면을 장기면으로 명칭변경 • 충북 충주시 역전동을 문화동으로 명칭변경 • 충북 단양군 단양출장소를 단성면으로 승격 • 경남 울산군 온양면 동상리 일부를 온산면 덕신리로 구역변경
1992.2.1	법률제4417호	시설치 및 군명칭변경 면의 읍승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고양군을 고양시로 승격 • 강원 춘성군을 춘천군으로 명칭변경 • 경북 달성군 화원면을 화원읍으로 승격
1992.3.1	장관승인 · 조례	읍출장소설치(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남양주군 진접읍 오남출장소 설치 • 경기 평택군 팽성읍 서부출장소 설치

년 월 일	법령 번호	변경 요지	변경 내역
	"	읍면칭변경	• 전북 임실군 둔남면을 오수면을 명칭변경
	"	일반시 구설치	• 경기 안양시 만안·동안출장소를 만안구·동안구로 설치
	"	읍면칭변경	• 경기 안성군 이죽면을 죽산면으로 명칭 변경
	"	일반시 구설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및 부천시 오정구 설치
	"	일반시 구명칭변경	• 경기 부천시 남구를 소사구로, 중구를 원미구로 명칭변경
	"	시구동간	<경기 부천시>
	"	경계조정	• 남구 역곡동 → 원미구 역곡동 • 남구 심곡동 → 원미구 심곡동 • 중구 원미동 → 원미구 원미동 • 중구 여월동, 작동 일부 → 원미구 춘의동 • 중구 도당동 → 원미구 도당동 • 중구 약대동 → 원미구 약대동 • 남구 중동, 중구 중동 → 원미구 중동 • 남구 상동, 송내동 일부 → 원미구 상동 • 남구 범박동 → 소사구 범박동 • 남구 괴안동 → 소사구 괴안동 • 남구 송내동 → 소사구 송내동 • 남구 옥길동 → 소사구 옥길동 • 남구 계수동 → 소사구 계수동 • 남구 여월동 → 오정구 여월동 • 중구 작동 → 오정구 작동 • 중구 원종동 → 오정구 원종동 • 중구 고강동 → 오정구 고강동 • 중구 오정동 → 오정구 오정동 • 중구 대장동 → 오정구 대장동 • 중구 삼정동 → 오정구 삼정동 • 중구 내동 → 오정구 내동
		시구간 경계조정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의 일부를 원미구 상동, 오정구 작동·여월동의 일부를 원미구 춘의동으로 경계조정
		읍면간 경계조정	• 경기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 일부 및 대덕면 소현리 일부를 안성읍 당왕리로 경계조정
1993.4.8		면간 경계조정	• 강원 원주군 부논면 일부를 문막면으로 편입
1993.9.15		면 명칭변경	• 전북 장수군 계내면을 장계면으로 명칭변경
1993.11.1	대통령령 제14006호	자치구간 경계조정	• 광주 광산구 금화동 일부를 서구 쌍촌동으로 편입
1993.12.1	조례	읍면간 경계조정	•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일부를 북면으로 편입
1993.12.1	대통령령 제14006호	시군간 경계조정	• 경남 진해시 안곡동의 저도, 망와도를 거제군 장수면 류호리에 편입
1994.8.16	조례	군청소재지 변경	• 전남 여천군청소재지 변경 • 여수시 공화동 1094 → 여천군 돌산을 우두리 1049
1994.11.22	조례		• 경기 평택군 읍면간 경계조정 • 오성면 당거리 일부를 팽성읍 도두리에 편입 • 오성면 당거리 일부를 팽성읍 대추리에 편입 • 오성면 신리 일부를 고덕면 방축리에 편입 • 청북면 백봉리 일부를 고덕면 동청리에 편입 • 청북면 울북리 일부를 고덕면 문곡리에 편입 • 고덕면 관리 일부를 오성면 안화리에 편입 • 오성면 안화리 일부를 청북면 백봉리에 편입 • 오성면 양교리 일부를 청북면 백봉리에 편입 • 고덕면 동청리 일부를 청북면 어연리에 편입

년 월 일	법령 번호	변경 요지	변경 내역
1994.12.1	조례	일반시 구간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북면 옥길리 일부를 포승면 흥원리에 편입 • 안중면 삼정리 일부를 현덕면 덕옥리에 편입 • 오성면 죽리 일부를 안중면 용성리에 편입 • 현덕면 덕옥리 일부를 안중면 삼정리에 편입 • 전북 전주시 • 완산구 서신동 일부를 덕진구 덕진동에 편입 • 덕진구 덕진동 일부를 완산구 서신동에 편입 • 덕진구 서노송동 일부를 완산구 경원동에 편입
1994.12.12	조례	읍면간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임실군 삼계면 신정리·망전리를 임실읍에 편입
1994.12.26	대통령령 제14434호	시군자치구간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자치구간 경계조정 <p><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구 상왕십리동 일부 → 동대문구로 편입 •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부 → 성북구로 편입 • 중랑구 묵동 일부 → 노원구로 편입 • 도봉구 번동 일부 → 성북구로 편입 • 도봉구 창동 일부 → 노원구로 편입 • 노원구 공릉동 일부 → 중랑구로 편입 • 양천구 신월동 일부 → 강서구로 편입 <p><부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하구 하단동 일부 → 북구 엄궁동으로 편입 • 해운대구 반여동 일부 → 금정구 금사동으로 편입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두암동·풍향동 일부 → 동구 산수동으로 편입 • 동구 산수동 → 북구 두암동으로 편입 <p><대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삼성동·사정동 일부 → 서구 복수동으로 편입 • 서구 용문동 일부 → 중구 중촌동으로 편입 • 서구 갈마동 일부 → 유성구 봉명동으로 편입 • 서구 삼천동 일부 → 유성구 도룡동으로 편입 • 유성구 전민동·탑립동·봉산동 일부 → 대덕구 신대동·와동·문평동으로 편입 • 동구 가양동 일부를 대덕구 비래동으로 편입 • 동구 대덕구 비래동 일부를 동구 가양동으로 편입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군 태안읍 영통리 일원, 신·강포리 일부를 수원시에 편입 • 화성군 반월면 입북리, 상수리 일원을 수원시에 편입 •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 일부를 수원시에 편입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부를 군포시에 편입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부를 군포시에 편입 •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부를 의왕시에 편입 • 군포시 산본동 일부를 안양시에 편입 • 군포시 당정동 일부를 의왕시에 편입 • 화성군 반월면 팔곡리, 건건리, 사사리 일원을 안산시에 편입 • 화성군 반월면 둔대리, 속달리, 대아미리, 도마교리 일원을 군포시에 편입 • 용진군 대부면 일원을 안산시에 편입 <p><강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군 하장면 원동리, 상사미리, 하사미리, 조탄리를 태백시에 편입

년월일	법령번호	변경요지	변경내역
1994.12.29	조례	면간 경계조정	<p><충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일부를 아산시 선장면에 편입 <p><전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수군 천천면 일부를 장수읍에 편입 • 김제군 용지면 금평리 일부를 완주군에 편입 •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일부를 전주시에 편입 • 김제군 백구면 도도·강홍·도덕리 일부를 전주시에 편입 •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 일부를 남원군에 편입 • 남원군 덕과면 용산리 일부를 장수군에 편입 •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일부를 무주군에 편입 •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 일부를 장수군에 편입 • 전북 김제군 봉산면 일부를 봉남면에 편입 • 전북 김제시 검산면 일부를 신흥동에 편입 • 전북 김제시 하동 일부를 흥사동에 편입
1995.1.1	법률 제4774호	도농복합형태시 설치(33개)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하여 남양주시 설치 <p><강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시와 춘천군을 통합하여 춘천시 설치 • 원주시와 원주군을 통합하여 원주시 설치 • 강릉시와 명주군을 통합하여 강릉시 설치 • 삼척시와 삼척군을 통합하여 삼척시 설치 <p><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시와 증원군을 통합하여 충주시 설치 • 제천시와 제천군을 통합하여 제천시 설치 <p><충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시와 공주군 통합하여 공주시 설치 • 대천시와 보령군을 통합하여 보령시 설치 • 온양시와 아산군을 통합하여 아산시 설치 • 서산시와 서산군을 통합하여 서산시 설치 <p><전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시와 옥구군을 통합하여 군산시 설치 • 정주시와 정읍군을 통합하여 정읍시 설치 • 남원시와 남원군을 통합하여 남원시 설치 • 김제시와 김제군을 통합하여 김제시 설치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주군과 순천시를 통합하여 순천시 설치 • 나주군과 나주시를 통합하여 나주시 설치 <p><경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시와 영일군을 통합하여 포항시 설치 • 경주시와 경주군을 통합하여 경주시 설치 • 안동시와 안동군을 통합하여 안동시 설치 • 구미시와 선산군을 통합하여 구미시 설치 • 영주시와 영풍군을 통합하여 영주시 설치 • 김천시와 금릉군을 통합하여 김천시 설치 • 경산시와 경산군을 통합하여 경산시 설치 • 상주시와 상주군을 통합하여 상주시 설치 • 영천시와 영천군을 통합하여 영천시 설치 • 점촌시와 문경군을 통합하여 문경시 설치 <p><경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원시와 창원군(東·北·大山面)을 통합하여 창원시 설치 • 마산시와 창원군(내서,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을 통합하여 마산시 설치

년 월 일	법령 번호	변경 요지	변경 내역
1995.1.1	법률 제4801호	도농복합형태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시와 진양군을 통합하여 진주시 설치 충무시와 통영군을 통합하여 통영시 설치 밀양시와 밀양군을 통합하여 밀양시 설치 장승포시와 거제군을 통합하여 거제시 설치 전남 동광양시와 광양군을 통합하여 광양시 설치 경남 울산시와 울산군을 통합하여 울산시를 설치
1995.1.1	법률 제4789호	직할시 명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명칭변경 부산직할시 → 부산광역시 대구직할시 → 대구광역시 인천직할시 → 인천광역시 광주직할시 → 광주광역시 대전직할시 → 대전광역시
1995.3.1	장관승인조례 "법률 제4802호	일반시 구설치 면 설치 자치구 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청주시 상당·흥덕출장소를 상당구, 흥덕구 설치 충남 연기군 소정출장소를 소정면으로 설치
1995.3.1	법률 제4802호	시도간 경계조정	<p><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동구를 성동구와 광진구로의 분구 도봉구를 도봉구와 강북구로의 분구 구로구를 구로구와 금천구로의 분구 <p><부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래구를 동래구와 연제구로의 분구 남구를 남 구와 수영구로의 분구 북구를 북 구와 사상구로의 분구 <p><인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구를 남 구와 연수구로의 분구 북구를 북평구와 계양구로의 분구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를 서 구와 남 구로의 분구 <p><경기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구로구 오류2동·개봉3동 일부가 경기도 광명시로 편입 인천광역시 북구 서운동 일부가 경기도 부천시로 편입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광명3동·광명5동·하인3동·소하1동 일부가 서울시 구로구로 편입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일부가 서울시 은평구로 편입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대둔리 일부가 강원도 원주군으로 편입 충북 청원군 강외면 심중리가 충남 연기군으로 편입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리가 충북 청원군 부용면으로 편입 <p><광역지역 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양산군 일부가 부산광역시 편입, 기장군 설치 경기 강화군·옹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 경북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 강원 춘천시 신북면을 신북읍으로 승격 강원 원주시 문막면을 문막읍으로 승격 충북 충주시 주덕면을 주덕읍으로 승격 충북 제천시 봉양면을 봉양읍으로 승격 충남 공주시 유구면을 유구읍으로 승격 충남 보령시 웅천면을 웅천읍으로 승격 전북 남원시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승격 전북 김제시 만경면을 만경읍으로 승격 전남 나주시 남평면을 남평읍으로 승격
1995.3.2	장관승인조례	도농복합형태시 지역의 읍설치(1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충주시 주덕면을 주덕읍으로 승격 충북 제천시 봉양면을 봉양읍으로 승격 충남 공주시 유구면을 유구읍으로 승격 충남 보령시 웅천면을 웅천읍으로 승격 전북 남원시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승격 전북 김제시 만경면을 만경읍으로 승격 전남 나주시 남평면을 남평읍으로 승격

년 월 일	법령 번호	변경 요지	변경 내역
1995.4.20	대통령령 제14629호	시군구간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김천시 아포면을 아포읍으로 승격 • 경남 창원시 동 면을 동 읍으로 승격 • 경남 울산시 농소면을 농소읍으로 승격 • 경남 마산시 내서면을 내서읍으로 승격 • 경남 진주시 문산면을 문산읍으로 승격 • 경남 통영시 산양면을 산양읍으로 승격 <p><서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봉구 쌍문동 일부가 강북구 우이동에 편입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구 서창출장소 관할구역을 편입하여 서창동으로 합 • 광산구 대촌출장소 관할구역을 편입하여 남구대촌동으로 합 • 서구 광천동 일부를 북구 운암동으로 법정동 명칭변경 <p><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 달성동 일부를 서구 비산동으로 편입 • 달서구 죽전동 일부를 서구 중리동으로 편입 • 달서구 감삼동 일부를 서구 내당동 및 중리동으로 편입 • 서구 내당동 · 중리동 일부를 달서구 감삼동으로 편입 • 달성군 화원읍 구리리 일부를 달서구 유천동 · 대천동으로 편입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군 태안읍 화리 · 강포리 일부를 수원시 팔달구로 편입하여 화동 · 강포동을 설치 • 군포시 산본동 일부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으로 편입 • 시흥시 장상 · 장하 · 수암동 · 화정동 일부를 안산시에 편입하여 안산동을 설치 •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 일부, 청호리 일부, 고현리 일부를 오산시 대원동으로 편입 • 완산군 서신동, 삼천동, 중인동, 용복동, 효자동, 상림동, 중동을 관할하는 효자출장소를 설치함
1995.4.20	장관승인조례	출장소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산군 서신동, 삼천동, 중인동, 용복동, 효자동, 상림동, 중동을 관할하는 효자출장소를 설치함
1995.5.10	대통령령 제4948호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탄시와 평택시 및 평택군을 통합하여 평택시를 설치함 <p><충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와 천안군을 통합하여 천안시를 설치함 <p><전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리시와 익산군을 통합하여 익산시를 설치함 <p><경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천포시와 사천군을 통합하여 사천시를 설치함 • 김해시와 김해군을 통합하여 김해시를 설치함
1995.5.10	장관승인조례	면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홍천군 북방면 일부를 화촌면 구성포리에 편입
1995.7.26	"	면간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포천군 소흘면을 소흘읍으로 승격
1996.2.1	"	과대면의 읍승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울산시 울주군 온산면을 온산읍으로 승격 • 경남 울산시 울주군 언양면을 언양읍으로 승격
1996.3.1	법률 제4994호	도농복합형태 시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용인군을 용인시로 설치 • 경기 파주군을 파주시로 설치 • 경기 이천군을 이천시로 설치

년 월 일	법령 번호	변경 요지	변경 내역
1996.3.1	장관승인조례	일반시 구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논산군을 논산시로 설치 • 경남 양산군을 양산시로 설치 • 고양시에 덕양·일산구를 설치함 • 덕양구 관할동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화정1동, 화정2동, 행신1동, 행신2동, 화전동, 대덕동 • 일산구 관할동으로는 식사동,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일산4동, 풍산동, 백석동, 마두1동, 마두2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송포동, 송산동
1997.5.7	장관승인조례	면의 읍승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용인군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승격 • 경남 양산군 물금면을 물금읍으로 승격 • 대구 달성군 농공면을 농공읍으로 승격
1997.7.14	조례	면의 읍승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정읍시 이평면 고부면 일부를 부안군으로 편입
1997.7.15	법률 제5243호	시군간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줄포면 일부를 정읍시로 편입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일부를 남원시와 임실군으로 각각 편입
1997.5.7	장관승인조례	읍면간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남원시 덕과면, 산동면 일부 및 임실군 지사면 일부를 장수군으로 편입 • 경기도 안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개면 가사리 일부 → 안성읍 가사리 보개면 가현리 일부 → 안성읍 가현리 대덕면 건지리 일부 → 안성읍 신건지리 대덕면 소현리 일부 → 안성읍 신소현리 대덕면 모산리 일부 → 안성읍 신모산리로 경계조정
1997.7.14	조례	면간 경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정읍시 소성면 일부를 고부면으로 경계조정
1997.7.15	법률 제5243호	광역시 승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울산시를 울산광역시로 승격 • 중구, 서구, 북구, 울주군 설치

3. 地方行政區域의 現況

오늘날 우리나라의 地方行政區域에는 1997년 12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6광역시·9도 그리고 72 시·91군·90구와 195읍·1,230면이 있다. 그러나 1,230면 가운데 미수복지구 10개면은 면장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행정구역 이외에 167개소의 출장소구역이 있는데, 도출장소는 4개소로써 경기북부, 강원동해, 충북중평, 충남계룡 등이 있으며, 시·군·구 출장소는 27개, 읍·면출장소는 136개가 있다. 이들 행정구역의 규모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表 1-3-9>와 같다.

(표 1-3-3) 行政區域의 면적과 인구 및 행정구역

구분	광역시	도	시	군	읍	면	동	
면적	평균	781.27	10,806.18	488.05	648.72	70.03	62.15	4.09
	최고	울산	경북	안동	홍천	인제	홍천내면	경주보덕
		1,055.54	19,025.85	1,517.77	1,818.73	315.20	447.88	80.94
	최하	광주	제주	구리	울릉	연기조치원	북제주우도	마산합포중성
501.32		1,845.53	33.30	72.52	13.57	6.02	0.1	
인구(명)	평균	2,061,361	2,637,209	261,733	66,100	18,695	5,225	15,594
	최고	부산	경기	성남	화성	용인수지	경산진량	김해내외
		3,849,864	8,312,025	913,666	167,303	55,603	248.22	58,695
	최하	울산	제주	태백	울릉	영월상동	철원근북	춘천칠송
1,000,480		525,637	62,427	10,798	2,101	204	451	
행정구역	평균	7구1읍6면 124동	7시10군	15.2동	10.2읍면	34.2리	31.4리	26.9통
	최고	부산	경기	성남	의성	보성	청원57	김해내외
		15구1군 2읍3면 234동	21시10군	3구44동	1읍17면	별교70리	익산황등57 통리	93통리
	최하	울산	제주	과천,오산	울릉	물금	철원근북	순천용수, 여수오천, 금정오류, 춘천칠송
1군4구2읍 10면50통		2시2군	6동	1읍2면	4리	1리	2통	

行政區域은 그 종별에 따라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역사적 전통, 현실적 필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이러한 원칙하에 확정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 행정구역간에는 자연히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우리나라 72개시의 평균면적은 495.94km²이고, 평균인구수는 248천명이며, 평균 관할동수는 15개동이다. 면적에 있어서 제일 큰 지역은 경북 안동시로 1,517.77km²이고, 인구와 관할동에 있어서 제일 큰 곳은 각각 914천명, 44개동에 달하는 성남시를 들 수 있다. 또한 현재 제일 작은 시로는 면적에 있어서는 33.30km²의 구리시를, 인구에 있어서 62천명의 태백시를, 관할동에 있어서는 6개동에 불과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를 들 수 있다.

전국 91개군의 평균면적은 639.4km²이고, 평균 인구수는 68천명이며, 평균관할 읍면수는 9.8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91개군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홍천군으로 1,818.73km²이고,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화성군으로 167천명이며, 가장 많은 읍·면을 지니고 있는 군은 1읍 17면을 관할하고 있는 의성군이다. 전국적으로 제일 작은 군으로는 그 면적에 있어서는 163.75km²에 불과한 용진군과 인구에 있어서는 11천명의 울릉군을, 그리고 관할읍면에 있어서는 1읍 2면에 불과한 울릉군과 1읍 4

면에 불과한 화천군 및 양구군을 들 수 있다.

한편, 전국 195개읍과 1,230개면의 平均規模를 비교하여 보면, 면적의 경우 읍은 평균 70.03km²인데 비하여 면은 평균 62.15km²로 읍이 약간 넓고, 그 인구규모에 있어서는 5.2 천명수준인 면에 비하여 읍은 19천명으로 3배를 능가하고 있다. 한편, 地方行政區域別 인구분포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지난 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상주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할 때 총 46,429천명 가운데 서울이 10,326천명으로 22.2%, 6개 광역시가 22,694천명으로 48.9%, 그리고 이외의 9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모두 23,735천명으로 51.1%의 비율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도의 지역을 다시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볼 때 시부의 인구가 17,592 천명으로 전국 인구의 37.9%, 군부의 인구가 6,213천명으로 13.4%로 되어 있어 지방행정구역면에서의 농촌과 도시의 비율은 32.0 : 68.0%의 비율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地方行政은 都市化의 진전에 수반하여 都市行政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지방행정구역별 인구규모를 보면 다음의 <表 1-3-10>과 같다.

(表 1-3-10) 地方行政區域別 人口總額

구 분	인 구(명)	면 적(km ²)	가 구	총인구비율
총 계	46,429,108	99,707.71	15,091,390	100%
서울특별시	10,326,064	605.72	3,430,654	22.2
지방계	36,103,044	99,101.94	11,660,736	77.8
광역시	12,368,163	4,687.64	4,153,199	26.6
도	23,734,881	94,414.30	7,507,537	51.1
(시 부)	17,592,436	34,652.12	5,518,974	37.9
(군 부)	6,213,465	60,980.42	1,943,485	13.3
읍	3,608,181	13,515.04	1,114,220	7.8
면	6,448,429	76,699.97	2,082,448	13.9

주 : 전국인구 총계는 상주인구조사 결과임(1996.12.31)

第4節 地方行政機構

1. 地方行政機構의 時代別 變遷

지방행정은 한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사회체제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地方行政의 機能과 役割이 변화되기 마련이며, 이는 역사적으